

ISBN 979-11-85663-86-9

연구-기본-21-04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박경하 · 한창근 · 김은하 · 이성학 · 박병현 · 강시온 |



【책임연구자】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이성학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

박병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문연구원

강시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발간사 <<

한국은 65세 이상 연령에 속한 인구가 14%가 넘는 이후 10년이 채 안 되어 2025년도를 기준으로 노인인구 20% 이상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2020년도에 65세 이상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기준의 상대적 빈곤율이 38.9%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처음으로 40% 이하로 내려갔다. 하지만 법정 정년은 만 60세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보다 낮고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약 42%로 개인이 적극적으로 노후에 대비하지 않으면 불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편만으로 불안정한 노후의 삶을 개선하기는 한계가 있다. 비정규직 등의 불안정한 노동형태가 확대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에서 생애과정에서 누적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이러한 측면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지는 노인일자리는 소득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퇴직연령이 지나 직면할 수 있는 소득단절을 막고 사회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이 사업의 대다수 참여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생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가구소득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노인일자리를 통해 확보되는 소득이 노인의 경제적 상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노인일자리 급여가 참여자의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시스템 정보와 사회보장 정보원의 행복 e음 정보를 연계한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도 의의가 크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와 복지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의 가치를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또한 복지적 측면에서 급여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경우 노인일자리와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노인일자리 급여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경하 선임 연구위원이 연구 책임을 맡고 진행되었으며, 공동 연구진으로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하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부연구위원, 이성학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행정업무와 연구지원을 맡아주신 박병현 전문연구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시온 연구원(성균관대학교 석사과정)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22년 2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김 미 곤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6
제2장 노인일자리 소득보장 정책목표와 소득기준 적용의 한계점	11
제1절 노인일자리 소득보장 목표와 빈곤감소 효과의 역설	13
제2절 참여자 자격기준에서 가구소득 기준의 변화	21
제3장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의 특성 분석	27
제1절 분석 자료 특성	29
제2절 분석결과	31
제4장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급여가 가구의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61
제1절 서론	63
제2절 분석 방법	65
제3절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68
제4절 소결	95
제5장 노인일자리사업과 소득불평등	101
제1절 선행연구	103
제2절 분석 결과	105
제3절 소결	12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7
제1절 주요결과	129
제2절 정책제언	131
참고문헌	137
부록(설문지)	139

표 목 차 <<

〈표 1-1〉 분석 데이터 구성	8
〈표 1-2〉 분석 데이터 사례수	9
〈표 2-1〉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에서 소득인정액 배점 변화	21
〈표 2-2〉 기초연금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구성 비교	22
〈표 2-3〉 사업유형별 참여자의 소득관련 기준 적용	23
〈표 2-4〉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현황	24
〈표 2-5〉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가구원수별 비율	25
〈표 2-6〉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동거가구 형태별 비율	25
〈표 3-1〉 관찰시점별 분석대상 규모	30
〈표 3-2〉 성별 현황	31
〈표 3-3〉 연령 현황	32
〈표 3-4〉 가구유형 현황	33
〈표 3-5〉 동거 가족 수 현황	34
〈표 3-6〉 세대구성 현황	35
〈표 3-7〉 지역규모 현황	36
〈표 3-8〉 공공부조 수급 여부 현황	37
〈표 3-9〉 소득인정액 현황	38
〈표 3-10〉 참여사업 유형 현황	39
〈표 3-11〉 연속참여 여부 현황	40
〈표 3-12〉 급여수준(연소득) 현황	40
〈표 3-13〉 성별에 따른 급여액 현황	41

〈표 3-14〉 성별에 따른 소득인정액 현황	42
〈표 3-15〉 연령에 따른 급여액 현황	44
〈표 3-16〉 연령에 따른 소득인정액 현황	46
〈표 3-17〉 가구 유형에 따른 급여액 현황	47
〈표 3-18〉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인정액 현황	48
〈표 3-19〉 세대구성에 따른 급여액 현황	50
〈표 3-20〉 동거 가족수에 따른 급여액 현황	51
〈표 3-21〉 지역 규모에 따른 급여액 현황	52
〈표 3-22〉 지역 규모에 따른 소득인정액 현황	53
〈표 3-23〉 참여사업에 따른 급여액 현황	54
〈표 3-24〉 참여사업에 따른 소득인정액 현황	55
〈표 3-25〉 공공부조에 따른 급여액 현황	56
〈표 3-26〉 공공부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현황	57
〈표 3-27〉 연속참여 여부에 따른 급여액 현황	58
〈표 3-28〉 연속참여 여부에 따른 소득인정액 현황	59
〈표 4-1〉 분석자료 변수 설명 및 특징	67
〈표 4-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대기자 현황	68
〈표 4-3〉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가구소득(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69
〈표 4-4〉 조사대상자의 평균 가구자산(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70
〈표 4-5〉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인정액	71
〈표 4-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현황	71
〈표 4-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평균 총급여(활동비)	72

〈표 4-8〉 조사대상자의 빈곤여부(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73
〈표 4-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대기자 집단별 빈곤여부의 교차분석	74
〈표 4-1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대기자 집단별 근로소득+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의 평균차이 분석	75
〈표 4-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대기자 집단별 소득 관련 변수의 평균차이 분석	76
〈표 4-12〉 노인 특성별 빈곤여부(2019년 12월말 기준)	77
〈표 4-13〉 노인 특성별 빈곤여부(2020년 12월말 기준)	78
〈표 4-14〉 노인 특성별 빈곤여부(2021년 6월말 기준)	79
〈표 4-15〉 조사대상자의 빈곤 완화 효과(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81
〈표 4-16〉 조사대상자의 빈곤완화 효과(균등화 경상소득을 중심으로)	83
〈표 4-17〉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의 빈곤완화 효과 분석	84
〈표 4-18〉 노인일자리사업 월기준 총급여 5만원 또는 10만원 인상시 빈곤 완화 효과	85
〈표 4-19〉 2019년과 2020년 빈곤율	86
〈표 4-20〉 2019년과 2020년 빈곤율(공익활동형)	87
〈표 4-21〉 2019년과 2020년 빈곤율(시장형)	87
〈표 4-22〉 2019년과 2020년 빈곤갭 비율	88
〈표 4-23〉 2019년과 2020년 빈곤갭 비율(공익활동형)	89
〈표 4-24〉 2019년과 2020년 빈곤갭 비율(시장형)	89
〈표 4-25〉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가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91
〈표 4-26〉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가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92

〈표 4-27〉 소득원천별 FGT지수의 분해	93
〈표 4-28〉 소득원천별 FGT지수의 분해(공익활동형을 중심으로)	94
〈표 5-1〉 변수의 조작적 정의	105
〈표 5-2〉 10분위 기준 분위별 소득평균	108
〈표 5-3〉 한국전체와 경상소득 기준 분위별 평균차이	109
〈표 5-4〉 한국전체와 경상소득-일자리참여소득 기준 분위별 평균차이	110
〈표 5-5〉 소득분위별 비율	112
〈표 5-6〉 소득분위별 비율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113
〈표 5-7〉 소득분위별 비율 : 노인 일자리 사업 대기자	114
〈표 5-8〉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연도별 소득배율 차이	115
〈표 5-9〉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연도별 소득배율 : 연령	116
〈표 5-10〉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연도별 소득배율 : 성별	117
〈표 5-11〉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연도별 소득배율 : 교육수준	118
〈표 5-12〉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연도별 소득배율 : 지역	119
〈표 5-13〉 지니계수 분해분석 결과표	122

그림 목차 <<

[그림 2-1] 한국의 노인빈곤율 변화 추이 17

[그림 5-1] 지니계수 추이 123

요약 <<

-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가구소득 특성을 살펴보고, 빈곤 및 소득불평등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재분배 기능을 개선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첫째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의 소득특성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선발기준이나 빈곤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표본조사를 통한 참여자 가구소득에 대한 분석 위주였고 정확성이 높은 소득자료를 통한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였음.
- 둘째는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급여가 노인가구의 빈곤 완화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노인일자리 빈곤 감소 효과는 정책효과 분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실태조사 자료 분석 차원을 뛰어 넘는 본질적인 이해에 도달 하고자 함. 그리고 그동안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노인일자리 소득불평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가구소득 구성 특성과 재분배 효과(빈곤, 소득 불평등)를 살펴보기 위해 노인일자리 참가자와 대기자, 미신청자의 특성을 분석하였음.
- 분석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에서 위의 세 집단에 대하여 2019년과 2020년 각각의 12월말 기준, 그리고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추출함. 추출한 자료 내용에는 인적특성, 가구특성, 급여액, 가구소득 등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됨.

x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 분석대상의 사례수는 관찰기간 동안 노인일자리 참가자는 총 1,991,525 명으로 '19년과 '20년 말, '21년 6월말 기준 각각 30.9 %, 34.8%, 34.3 %로 나타났음. 각 관찰시점별 구체적인 수치는 각각 615,541명, 692,301명, 683,683명임.

- 대기자 사례수는 '19년 48,688명, '20년 59,440명, 그리고 '21년 113,869명임.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21년에는 대기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 미신청자는 '19년 4,659,366명, '20년 4,883,761명, 그리고 '21년 5,034,378명이 포함됨.

〈표 1-2〉 분석 데이터 사례수

(단위: 명)

구분	2019년 12월말	2020년 12월말	2021년 6월말	계
참가자	615,541	692,301	683,683	1,991,525
대기자	48,688	59,440	113,869	221,997
미신청자	4,659,366	4,883,761	5,034,378	14,577,505

1.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의 특성 분석

1) 인구학적 특성

-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대기자, 미신청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 보면 참가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남성 약 30%, 여성 약 70%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기자, 미신청자의 경우 남성의 비중이 참가자에 비해 다소 높음
- 평균 연령은 참가자 집단이 다소 높은 양상임. 평균 연령이 약 76세로 대기자, 미신청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약 1세 높음. 연령대별로 보면 노인일자리 참가자 중 70세 이하인 경우는 약 12~13%로 세 집단 중에 가장 낮고, 75세~80세 미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음.
 - 참가자의 가구는 대기자와 미신청자에 비해 부부가구보다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았음.
 - 노인일자리 참가자는 대기자와 미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중이 가장 많고, 타 집단에 비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기초보장 수급자의 비중을 보면 세 집단 중 참가자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비중은 근소하게 증가하여 '19년 0.3%, '20년 0.4%, '21년 1.5%를 차지하고 있음. 참가자 중 차상위계층 비중은 '19년 7.7%, '20년 7.8%, '21년 7.3%로 나타나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세 집단의 평균 소득인정액을 비교한 결과 대기자의 소득인정액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미신청자, 참가자
 - '19년 기준 참가자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약 43만원에서 '20년 약 45만원, '21년에는 약 51만원으로 점점 증가하는 양상으로 확인됨.

2) 급여 및 소득인정액 비교

-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의 개인특성에 따른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세계의 관찰기간 동안 모두 여성의 급여가 남성의 급여보다 높게 나타났음.
- 한편, 성별에 따른 소득인정액 현황을 보면 노인일자리 참가자와 대기자, 미신청자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소득인정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소득인정액 현황을 보면 급여액 수준과는 달리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인정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유형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 급여의 차이가 점차 감소하는 것과 달리 소득인정액은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규모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참가자의 경우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평균 소득인정액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았음.
- 참여사업에 따른 급여수준은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한 노인의 급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시장형, 공익활동형, 그리고 재능나눔활동형의 순이었음.
- 참여사업 중에 급여수준이 높은 순서가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공익활동형, 재능나눔활동의 순이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은 순서는 재능나눔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공익활동형 순이었음.
- 공공부조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인정액은 눈에 띄게 높은 차이를 보여 '19년과 '20년에는 약 37만원, '21년에는 약 44만원의 차이로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음.

- 연속참여 여부에 따른 급여액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연속적으로 참여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급여액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19년, '20년, '21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연속해서 참여한 노인의 평균 급여액은 각각 약 277만원, 약 275만원, 약 114만원이었음.

2.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급여가 가구의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본 장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급여가 노인 가구의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통계자료와 사회보장시스템 행복e음 기초연금 수급자 관련 행정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음.
 - 조사 시점은 2019년 12월, 2020년 12월, 그리고 2021년 6월, 이렇게 3개의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이용하였고 빈곤선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수준과 경상소득 중위소득의 50%를 이용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업 참여자와 대기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주요 분석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빈곤율, 빈곤갭, 그리고 빈곤갭 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을 통제한 뒤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가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음.

-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기초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2019년 약 61만 명에서 2021년 6월 기준 약 68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대기자의 경우에도 2019년 약 48천명 수준에서 2021년 6월 기준 113천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노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의 가구소득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소득과 비교하여 2020년 약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6월 기준 시점에서는 가구소득이 많이 증가하였음(예, 경상소득의 경우 2019년 594,188원, 2020년 577,205원, 2021년 6월 709,400원).
 - 월평균 소득인정액의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의 소득인정액은 2019년 432,932원에서 2020년 445,956원 그리고 2021년 6월 510,046원으로 증가하였음.
 - 노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의 평균 총급여는 사회서비스형이 가장 많은 총급여를 받고 있고, 뒤를 이어 시장형, 공익활동형, 그리고 재능나눔활동형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자의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하면 참여자의 경우 2019년 93.2%, 2020년 93.5%, 그리고 2021년 6월 기준 90.8%로 나타났음. 둘째,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참여자보다 대기자의 소득인정액 수준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그리고 일자리아사업 참여자 총급여를 합한 경우 노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의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셋째, 경상소득을 통한 분석결과에서도 경상소득만 조사한 경우 대기자의 소득이 높게 나타났으나, 기초연금과 월기준 총급여를 합한 경우 노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의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일자리아사업 참여를 통한 빈곤 완화 효과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지급한 경우와 노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의 총급여를 각각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아사업 참여 총급여의 빈곤완화 효과가 유사하게 나왔음.
 -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 그리고 사업 총급여를 모두 더한 경우 빈곤율은 93.2%에서 77.1%(2019년 기준), 93.5%에서 76.8%(2020년 기준), 90.8%에서 74.9%로 각각 감소하였음.

-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가 영향을 준 빈곤율 감소 효과는 조사시점 순으로 각각 10.0%p, 11.1%p, 8.6%p로 나타났음.
 - 경상소득을 통한 분석에서도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의 빈곤 감소효과는 유사하게 나타났음.
 - 추가적으로 경상소득에 기초연금액과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를 더한 경우 빈곤율은 95.7%에서 72.2%(2019년 기준), 96.3%에서 83.0% (2020년 기준)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상소득을 통한 분석에서도 경상소득+기초연금액을 기초로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18.5%p와 10.2%p로 나타났음.
 - 추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가 각각 5만원과 10만원 인상했을 경우에 빈곤 완화효과를 경상소득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5만원 인상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빈곤율은 2019년 65.0%, 2020년 78.8%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0만원을 인상했을 경우에는 2019년 57.4% 그리고 2020년 73.1%로 빈곤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9년과 2020년을 패널분석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지위 변동에 따른 빈곤율 변화를 분석하였음. 우선 대기자-대기자의 경우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기자-참여자의 경우 빈곤율이 감소하였으나, 참여자-참여자의 경우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익활동형과 시장형을 통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유형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빈곤갭을 통한 분석에서도 대기자-참여자의 빈곤갭 개선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기자-대기자, 그리고 참여자-참여자의 빈곤갭 개선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음.

-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과 2020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는 빈곤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Shapley 방법에 의한 소득원천별 FGT(Foster, Greer, & Thorbecke) 지수의 분석결과, 본 연구의 경상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적이전소득 약 32.9%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근로소득 17.8%, 기초연금액 24.9%,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액은 20.7%로 확인되었음.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액을 중심으로 해석해보면 빈곤한 사람이 100명이 있을 경우 급여액은 약 6명의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함. 그리고 빈곤갭이 100원일 때 약 17원 정도의 갭을 줄여주고, 빈곤의 흑독함이 100이라고 한다면 약 20만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3. 노인일자리사업과 소득불평등

- 노인 일자리 참여자/대기자의 경우 한국 전체 소득 기준으로 대입하여 보았을 때 대부분 빈곤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생각됨.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를 통해서 매월 평균 26만원 정도를 받으며, 한국 전체 분위별 기준으로 1분위에서 2분위로의 이동으로까지 이어졌음. 또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대기자에 비해 소득수준이 매우 낮는데, 일자리 참여로 인해 소득 수준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었음. 마지막으로 참여자/대기자의 경상소득과 일자리 참여소득을 뺀 경상소득으로 10분위를 구분한 결과 일자리 참여 소득 이전에는 1분위의 기준이 1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일자리 참여 후 1분위의 기준이 월 소득 30만원 정도로 증가하였음.
- 분위 배율에 따른 소득불평등 정도는 80대, 여성, 대졸이상, 도 단위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실질 일자리 참여로 인한 소득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는 연령(80대이상), 성별(남성)에서만 차이가 나타났음.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질 소득의 증가에서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에 소득불평등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빈곤에 대한 개선, 실질 임금개선 정도 개선 효과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음.
- 그리고 지니계수 분해분석 결과 노인의 소득에 2/3정도가 공적소득이 전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공적이전소득은 다른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과는 달리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을 뺀 소득과 포함한 경상소득을 비교하였을 때 포함한 경우에 소득불평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최승은(2020)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가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동일한 것임.

- 그러나 전체 집단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과는 달리 대기자와 참여자의 소득을 비교하였을 때 참가 유무로 인해 하위소득 10%에서 벗어나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특히 빈곤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살의 문제가 심각한 한국의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적부조/데모그란트 형태의 기초연금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였을 때 하위 70%를 위한 현금 급여형태 보다는 노동 가능한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통해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하위 1,2분위의 노인을 중심으로 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인일자리 사업은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타겟팅 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을 타겟팅 한 설계와 운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소득비례형 공적연금이 주축이 된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기반이 탄탄하지 못함. 국민연금이 도입된 역사가 짧아 현 노인세대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였고, 소득대체율이 낮아 연금의 사회보장 기능이 약함. 오히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고용이력과 기여를 요구하지 않는 기초연금이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다수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노인일자리 급여는 부족한 기초연금액에 부가적인 소득이 되고 있음.
-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급여의 연계는 더 절박한 욕구에 대응하려는 의도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됨.
 - 공적연금 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노인이 노인일자리에 우선적으로 포섭되면서 노인일자리 정책은 보편적인 욕구를 표적화 하기 보다 생계를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 이렇게 표적화 된 급여는 수직적 재분배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자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정책대상을 타겟팅 함으로써 노인일자리의 선별주의 성격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공적연금의 취약성으로부터

4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터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노인일자리 정책은 제도 내적인 자율성이 약화되면서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을 취하지 못하고 있음.

- 주요 정책대상을 표적화(targeting)하는 정책적 판단을 하려면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소득지위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을 통해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기초연금에 부가소득으로 기능하는 노인일자리 급여가 직접적으로 노인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함. 손병돈 외(2019)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해 노인일자리 급여가 전체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노인일자리 급여수준, 참여개월, 참여자 규모를 변동요인으로 고려하였음.
 - 노인일자리 급여가 노인 빈곤율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는 데 표본조사 자료의 특성상 객관성과 정확성에서 한계가 있음. 자기기입식의 표본조사가 아닌 행정절차에 따라 확인한 평가소득 정보를 활용한다면 분석을 통해 참여노인 가구의 가계소득 구조와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저소득 노인가구의 빈곤특성과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이 연구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가구소득 특성을 이해하고, 빈곤 및 소득 불평등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노인일자리 재분배 기능을 개선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근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두 가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음.
 -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가구의 소득특성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선발기준이나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은 표본조사를 활용한 가구소득 분석을 위주로 진행하였고, 일반화할 수 있는 정확성이 높은 소득 정보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둘째는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급여가 노인가구의 빈곤 완화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노인일자리 빈곤 감소 효과는 정책효과 분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실태조사 자료 분석 차원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이해에 도달하고자 함. 그리고 그동안 연구를 시도되지 못한 노인일자리 소득불평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 연구내용

- 제시한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적용하였음. 제 2장에서는 노인일자리의 소득보장 목표를 검토하고 빈곤감소 효과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에서 가구소득 기준과 가구구성 형태를 검토하였음.
- 제 3장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였음.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노인일자리업무 시스템에서 추출한 정보를 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노인일자리 참가자, 대기자, 미신청자로 구분한 후 가구의 인적 특성 및 소득인정액 등을 비교 분석하였음.
- 제 4장에서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급여가 빈곤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소득인정액 기준과 경상소득 기준으로 빈곤 지표(빈곤율, 빈곤갭, 빈곤의 흑독함)를 측정하고 노인일자리 급여가 빈곤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참여자와 대기자 간에, 시점 간(2019년~2020년)에 비교하였음. 또한 Shapley 방법에 의한 소득원천별 FGT(Foster, Greer, & Thorbecke)지수를 이용하여 경상소득을 구성하는 각 소득원의 비중과 소득에 대한 기여도(절대적, 상대적)를 분석하였음.
- 제 5장에서는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음. 분석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에서 공개하는 10개의 분위별 경상소득 기준으로 소득분위와 소득분위배율, 지니계수 분해를 참여자, 대기자 간, 시점 간에 비교 분석하였음.

2. 분석자료

-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가구소득 구성 특성과 재분배 효과(빈곤, 소득불평등)를 살펴보기 위해 참여자에 대비되는 비교집단으로 대기자 집단을 비교하였음. 대기자는 당해 연도 사업에 신청했으나 참여하지 못한 노인으로 설정하였음.
- 이러한 분석틀을 기초로 한 비교 분석을 위해 두 가지 차원의 행정 데이터를 사용하였음. 첫째, 활용된 행정데이터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업무 시스템으로, 여기에는 사업과 관련된 인적특성, 선발자격, 선발점수와 기초연금 수급자 판정에 활용된 가구소득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둘째, 사회보장정보원의 노인일자리 업무처리 시스템 정보와 기초연금 수급자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하는 소득관련 정보를 결합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음.
 - 연구목적에 고려한 분석 대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최근 3년간으로 설정하였고 분석 데이터 구성은 다음과 같음.

8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표 1-1〉 분석 데이터 구성

구분	기초연금수급자(참여자, 대기자)	기초연금수급자(비참여자)
인적특성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원수, 세대구성, 2021 참여여부, 2020 참여여부, 2019년 참여여부, 2019년 이전 참여여부, 수행기관명, 사업유형, 기초연금수급여부,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연속참여여부, 중도포기여부, 급여(활동비)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원수 등
선발자격	기초생활수급여부, 의료급여여부, 주거급여여부, 교육급여여부, 기초생활소득인정액, 기초연금수급여부, 기초연금소득인정액등급, 기초연금소득인정액, 장기요양보험판정여부, 장기요양보험판정등급, 차상위장애인지역여부, 차상위자활자격여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자격여부, 차상위계층확인자격여부, 건강보험직장가입여부	-
선발점수 (각각 100점)	공익형: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보행능력, 의사소통, 차상위계층해당 사회서비스형 : 의사소통역량, 신체활동능력, 공적수급(만60-64세), 공적수급(만65이상), 세대구성, 컴퓨터활동능력, 정보검색능력, 적극성, 친절 협조적단계, 갈등해결능력, 유관자격증가점 시장형: 관련분야자격, 관련분야경력, 세대구성, 공적지원수급, 활동역량	-
가구소득	기초연금: 가구유형, 거주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액,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생활보장제도 : 가구원수, 장애가구원유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월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부양의무자 유무, 급여유형, 기초보장급여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가구유형, 거주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액,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생활보장제도 : 가구원수, 장애가구원유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월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부양의무자 유무, 급여유형, 기초보장급여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분석대상의 사례수는 관찰기간 동안 노인일자리 참가자는 총 1,991,525 명으로 '19년과 '20년 말, '21년 6월말 기준 각각 30.9 %, 34.8%, 34.3 % 로 나타났음. 각 관찰시점별 구체적인 수치는 각각 615,541명, 692,301 명, 683,683명임.
- 대기자 사례수는 '19년 48,688명, '20년 59,440명, 그리고 '21년 113,869명임.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21년에는 대기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 미신청자는 '19년 4,659,366명, '20년 4,883,761명, 그리고 '21년 5,034,378명이 포함됨.

〈표 1-2〉 분석 데이터 사례수

(단위: 명)

구분	2019년 12월말	2020년 12월말	2021년 6월말	계
참가자	615,541	692,301	683,683	1,991,525
대기자	48,688	59,440	113,869	221,997
미신청자	4,659,366	4,883,761	5,034,378	14,577,505

제 2 장

노인일자리의 소득보장 정책목표와 소득기준 적용의 한계점

- 제1절 노인일자리 소득보장 목표와 빈곤감소 효과의 역설
- 제2절 참여자 자격기준에서 가구소득 기준의 변화

2 노인일자리의 소득보장 정책목표와 << 소득기준 적용의 한계점

제1절 노인일자리의 소득보장 목표와 빈곤감소 효과의 역할

1. 소득보장에 대한 기능적 역할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에는 노인일자리의 정책목표가 반영되어 있음.
 - 이론적 차원에서 사회활동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 사회활동의 범위에 대한 설정은 연구자들 마다 제시한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임(오승환, 2007; 정병은, 이기홍, 2009).
 -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 체계에서 정의된 사회활동 개념은 경제활동이 아닌 활동을 의미함. 즉 일자리와 사회활동은 상충관계에 있는 개념임.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대부분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이러한 참여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사회활동’은 생산적 활동을 제외한 사회참여 활동으로서 건강, 사회적 관계, 자원봉사활동 등 비경제적 욕구를 가진 참여자에게 부합됨.
- 노인일자리의 세부 유형에서 공익활동은 사회활동을 대표하는 사업이자 노인일자리 전체 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임. 소득욕구가 가장 높은 저소득층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욕구와 사업 간의 미스매칭이 발생함.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프로그램화하고 있는 사회활동은 자원봉사활동 개념과 유사함. 문제는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과 무보수성이 핵심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전용호·이금룡,

14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2013), 이와 같은 비경제적 인정과 보상을 전제로 현재의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의 목적과 지원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음.

- 사회활동 유형을 대표하는 공익활동은 사업이 표방하는 기본전제와 달리 실재는 적절한 보수 수준과 일자리의 질 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평가받고 있음(김우주, 2016).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합목적성 측면에서 보면 제도 내에서 비정합성 문제가 내재해 있음. 사회활동 유형은 자원봉사 활동의 관리방식이 아닌 근로자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한편 사회서비스형, 민간분야 일자리와 같은 사업유형은 임시직 근로조건과 낮은 수준의 일자리라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반적인 노인일자리가 비정합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노후 소득보장은 노령 및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 상실 위험에 대비한 사회적 대책이며 노후에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을 뜻함.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보장에 있음.
 - 빈곤은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함.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사업 참여 이전에 75.4%로 심각한 정도를 나타냄(손병돈 외, 2019).
- 노후소득보장의 핵심 제도인 국민연금 제도의 수급률은 40.8%로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음.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74세로 국민연금 수혜를 받지 못해 대다수는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있음.
 - 한편 2019년 노인일자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노인은 공적이전 뿐만 아니라 사적이전 또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보조금이 연평균 313만원이고 사회보험이 연평균 148만원인데 비해 사적이전 소득은 100만원에 불과하였음.

- 소득보장이 불안정한 사람은 사회참여 활동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음. 빈곤상태에 있는 저소득 노인은 사회참여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낮음(이성은, 2013).
-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을 정하는 자격조건은 선별주의 원리와 보편주의 원리로 구분됨. 선별주의는 욕구의 불충분 상태에 있거나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을 자산조사를 근거로 선정하는 할당원리인 반면에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급여의 자격을 부여하는 할당원리임. 하지만 이러한 개념적 원리로 정책을 구분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음(구인회 외, 2010).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여여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방식, 차별적 욕구에 기반하여 급여를 할당하는 정책(예컨대 아동수당, 공적연금, 실업보험 등)도 특정 집단을 분리시키는 기준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편주의적 정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강욱모, 2018).
-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재분배 정책은 보편적이어야 하는지, 특정 가난한 집단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별적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지는 오래 동안 거듭해 온 논쟁이었음. 이는 결국 사회정책의 정책대상에 안정된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중산층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한 의문이기도 함. 중산층이 포함되면 정치적 지지를 얻게 되어 재분배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도 늘어날 것임.(Korpi & Palme, 1998). 선별주의를 실현한 빈곤선(poverty line) 정책은 노동계급을 분화시키고 부유한 노동자와 중산층이 조세저항과 복지국가에 대한 반대 연합을 형성하게 함.
- 선별주의 정책은 자원을 욕구가 가장 큰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빈곤을 제거하는 데 보편주의 정책보다 비용 효과적일 수 있음(구인회 외, 2010).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저소득층을 타겟팅하여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오히려 빈곤완화 효과가 떨어지는, 이른바 재분배의 역설(paradox of redistribution)이 나타남. 여러 실증연구에서 보편적인 접근이 선별적 방식보다 더 큰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음(Hicks and Swank, 1984; Ringen and Uusitalo,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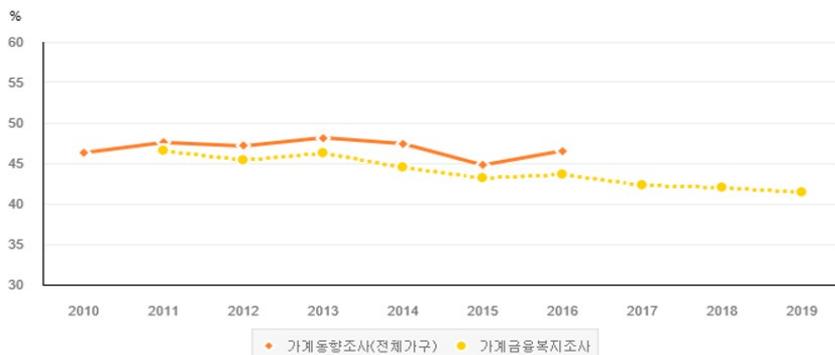
16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 팔메(Palme, 1993)는 연금에 관한 연구에서 보편적이면서 소득비례적 공적연금제도가 정액급여에 비해 고령자 간에 불평등을 낮추는 결과를 확인하였음. 그는 가장 불평등한 공적연금이 가장 평등한 재분배를 낳는 역설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음.
- 한국 복지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 본 다수의 연구들은 재분배 역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지배적임(남재욱, 2018 등). 그 이유는 재분배의 역설론에서 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소득비례형 사회보험 제도가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취업상태가 불안정한 집단을 적절하게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사각지대가 크게 형성되었기 때문임. 또한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도 재분배 역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임.
- 65세 이상 대부분의 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20). 2014년도 기초연금 도입 이후 국민연금 등 타 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국민연금액은 월 평균 10만원 정도 노후소득보장이라고 하기에 무색함(노대명 외, 2020).
- 한국 고령자들은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음. 2020년 기준으로 퇴직연령에 접어든 60세 이상 연령의 44.0%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35.3%가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음(통계청, 2020).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음.
- 한편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 2006년 50.3세에서 2020년 2016년에 49세까지 떨어졌고 주된 일자리 이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남재량·김동배, 2020). 노인일자리사업은 60세 이후 고령자에게 소득단절의 위기로 사회보장 불안정을 완화하는 역할을 떠맡고 있음. 이러한 노인일자리 사회보장 기능은 제도적 선택이라기보다 노후 소득

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비롯된 위임된 역할이며, 민간 노동시장에서 생계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한 고령자들이 진입하는 노동생애의 종착지 역할을 함.

-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노인빈곤율 여부를 가름하는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0년 전후로 변화를 보였음. 2010년대 초반까지 노인빈곤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노인빈곤율은 2006년 42.8%에서 2013년 46.3%까지 기록하였으나 이후로 감소하여 2019년도에 41.4%까지 줄어들었음. 성인자녀 동거가구가 감소하는 가족구조의 변화가 노인빈곤율을 상승시킨 주된 요인이었다면 2014년도에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노인빈곤율이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음(손병돈 외, 2019). 물론 최근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이 개선되는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1] 한국의 노인빈곤율 변화 추이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18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 노인일자리 급여는 기초연금에 비해 전체 노인빈곤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음.
 - 우선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규모에서 큰 차이가 남.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원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약 16조 8천억 인데(국비 13조 2천억) 비해 노인일자리에 투입되는 국비는 1조 3천억 수준으로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음.
 - 둘째, 정책대상, 즉 수혜자 규모에서도 큰 차이가 있음. 2020년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은 80만명 규모인 것에 비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2020년 기준(9월)으로 561만명으로 전체노인의 67% 인원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았음.
 - 셋째, 총 급여액 수준에서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 노인일자리 급여는 월 27만원(공익활동)으로 기초연금 월 30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임. 노인일자리사업은 연속참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참여조건은 한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음. 하지만 기초연금은 하위 70% 미만에서 소득이 유지될 경우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능을 함. 또한 노인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기초연금에 의한 가구단위의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높은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음.
- 대다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요구하는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급여는 기초연금에다 보충적으로 가구 소득에 기여함. 공익활동 참여자의 소득수준 향상은 인원 규모 측면에서 다른 사업유형에 비해 파급력이 높아 노인빈곤 완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음.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전체 참여인원 68만 4천만명 중 73.7%는 기초연금 수급 조건으로 선발된 공익활동 참여노인이었는데, 다른 사업 유형에도 이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수적으로 더 많다고 보아야 함. 하지만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급여가 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함.

- 손병돈 외(2019)는 제 13차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두 가지 측면을 분석하였음. 우선 참여노인이 사업에 참여한 전후로 빈곤율을 살펴 보았는데, 중위소득 50%의 상대빈곤율은 7.3p%(75.4%→68.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전체 노인대상으로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 보았는데, 빈곤율은 0.6%p(46.0%→45.4%) 감소하여 노인일자리 급여의 빈곤감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음.
- 김기태 외(2020)는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기초보장, 기초연금을 결합한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는 약 16%였음.
 -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를 비교해 보면 세 가지 제도 중에 노인일자리의 노인 빈곤율 개선효과는 1.0%로 가장 낮고 기초보장제도가 1.3%, 기초연금 13.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노인일자리의 빈곤율 완화 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 빈곤의 심도가 높은 소득 하위 1분위에 있는 노인의 참여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음. 이러한 연구들 외에도 노인일자리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 본 여러 연구들은 노인일자리의 소득보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음(김민길 외, 2018; 이지혜·황남희, 2019 등).
- 강은나 외(2017)는 공익활동 급여수준은 노인의 소득수준을 빈곤선까지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하였음. 조사자료에서 시장형 사업단 참여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65.52%인데 비해 공익활동 참여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84.51%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이 연구에서는 공익활동보다 시장형 사업단이 훨씬 빈곤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시장형 사업단이 공익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참여하여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음.

20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 노인일자리사업 체계 내에서 분배의 역설이 작동함. 가난한 노인들 위주로 사업의 정책대상을 표적화 한다면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보장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음. 노인일자리 급여만큼 빈곤한 노인의 소득이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러한 정책방향이 반드시 빈곤을 개선하는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중위소득 50%는 월 91만원 수준인데 일자리 급여는 29.6% 수준인 월 27만원에 불과하며,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까지 고려하더라도 월 57만원 수준으로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지위로 이동하지 못하는 노인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바닥에서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노인일자리 급부를 통한 빈곤탈출을 정책 목표로 급선무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 만약 후자가 중요한 이슈라면 빈곤선 근처에 있는 노인의 소득증가 혹은 표적화가 가장 중요한 관건임.

제2절 참여자 자격기준에서 가구소득 기준의 변화

1.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득기준

-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은 저소득 노인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음.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 구간을 늘리면서(9구간→ 10구간),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변경하였음.

〈표 2-1〉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에서 소득인정액 배점 변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소득인정액 9구간 -(단독) 0원 초과~5만원 이하 -(부부) 0원 초과~10만원	전년동	-소득인정액 항목 및 배점조정(10구간) -(단독/부부)0원 구간 신설	-세대구성 배점 조정(최대 12-5점) -활동역량 배점 조정(최대 10점→15점)	전년동

- 참여자 선발기준에서 가구소득 정보 :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을 위해 별도로 소득·재산 내역을 파악하지 않고 그 대신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 확인 된 소득인정액을 구간별로 점수화 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에 적용함.
 - 65세 이상이 된 노인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를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됨.
 -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된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산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도출하는 수식과 고려하고 있는 세부 재산 및 소득 항목이 서로 다름.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공적 자료

22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로 파악되는 소득을 활용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모든 재산 종류의 4%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소득(재산)조사가 엄격하지 않음. 또한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의 30%를 추가적으로 공제하며, 기본재산액 공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단순하며 범위도 넓음.

〈표 2-2〉 기초연금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구성 비교

구분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	$0.7 \times (\text{근로소득} - 98\text{만원}) + \text{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소득 인정액	$\left[\left(\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 \right) + \left(\text{금융재산} - 2,000\text{만원} \right) - \text{부채} \right] \times 0.04 \left(\text{재산의 소득환산율} \right) \div 12\text{개월} + \text{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text{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부채}) \times \text{소득환산율}$ ①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임차보증금, 동산 및 입목, 금융재산, 자동차 등 ② 기본재산액 : 대도시(의료급여 5400만원,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부양의무자 22,800만원), 중소도시(의료급여 3400만원, 생계·주거·교육급여 4,200만원, 부양의무자 13,600만원), 농어촌(의료급여 2900만원, 생계·주거·교육급여 3,500만원, 부양의무자 10,150만원)
소득 환산율	재산의 연 4%	- 주거용재산(수급자 월 1.04%, 부양의무자 월 1.04%) - 일반재산(수급자 월 4.17%, 부양의무자 월 4.17%) - 금융재산(수급자 월 6.26%, 부양의무자 월 4.17%) - 승용차(수급자 월 100%, 부양의무자 월 4.17%)

○ 노인일자리의 참여자 선정기준은 사업유형별로 달리 적용됨.

- 공익활동은 소득인정액의 가산점이 최대 60점이며, 단독가구, 부부가구 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소득 구간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소득인정액 구간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되며 가구구성이 단독과 부부 가구유형에 따라 점수대를 0점에서 최대 60점까지 부여함. 이처럼 공익활동은 일자리 참여조건에서 소득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임.
- 사회서비스형은 차상위 자격유무와 소득인정액 유무에 따라 각각 10점을 적용함으로써 소득기준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시장형 사업단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가점을 30점까지 부여하고 60~64세 중 차상위계층인 경우 20점을 적용함.

〈표 2-3〉 사업유형별 참여자의 소득관련 기준 적용

구분		소득기준(소득인정액)		배점(100)
공익활동	단독 가구	0원		60
		0원 초과~5만원 이하		50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40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		30
		15만원 초과~20만원 이하		25
		20만원 초과~25만원 이하		20
		25만원 초과~30만원 이하		15
		30만원 초과~35만원 이하		10
		35만원 초과~40만원 이하		5
		40만원 초과~		0
	부부 가구	0원		60
		0원 초과~10만원 이하		5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30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25
		4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20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15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10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		5		
80만원 초과~		0		
사회 서비스형	공적수급여부 (만60세 ~ 64세)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10
		차상위계층 자격이 없는 경우		0
	공적수급여부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 0원		10
		소득인정액 0원 초과		5
		기초연금 미수급		0
시장형 사업단	공적 지원 수급여부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0원'	20
			소득인정액 '0원 초과'	10
		미수급		0
		60~64세 중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24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현황

-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의 소득인정액 수준 분포를 보면, 소득인정액 선발 점수는 최고점인 60점인 참여자가 전체의 19%로 나타났음. 이들은 참여자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리고 30점 이하인 경우가 42.5%로 확인됨.
- 한편 참여자의 24.8%는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인정액 점수를 0점을 받은 경우였음.

〈표 2-4〉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현황

구분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			
							보행능력		의사소통	
배점	60		5		5		15		15	
분포	60	19.0	5	26.4	5	2.7	15	61.5	15	62.6
	50	6.7	0	73.6	3	38.0	12	20.7	12	20.2
	40	7.0			1	32.6	9	13.3	9	12.8
	30	9.8			0	26.7	6	3.2	6	3.0
	25	8.8					3	1.2	3	1.2
	20	7.6					0	0.2	0	0.2
	15	6.5								
	10	5.3								
	5	4.4								
	0	24.8								
평균	26.0		1.3		1.6		13.1		13.2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20), 2020년 2월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행정자료

2.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표준가구

○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는 1~2인 가구 형태가 주를 이룸

- 2019년 참여노인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참여노인의 가구는 대부분 2인 이하의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형태가 전체의 88.9%를 차지함.

〈표 2-5〉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가구원수별 비율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기타
32.9	56.0	5.6	2.3	-	0.1

자료 :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 비수급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의 소득 지위

- 노인부부 가구형태가 전체의 51.5%를 차지함.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비수급 상태에 있는 비수급빈곤층은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97.4%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노인가구는 80.2%로 비중이 매우 높음(한경훈 외, 2019).
- 높은 상대빈곤율을 보이는 참여노인이 비수급 빈곤층 집단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

〈표 2-6〉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동거가구 형태별 비율

노인독거	노인부부	경제력 있는 가족 동거	경제력 없는 가족동거	기타
32.9	51.5	12.0	3.6	0.1

자료 :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제 3 장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의 특성 분석

제1절 분석 자료 특성

제2절 분석결과

3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의 특성 <<
분석

제1절 분석 자료 특성

- 노인일자리 참가자와 대기자, 미신청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에서 위의 세 집단에 대하여 2019년과 2020년 각각의 12월말 기준, 그리고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추출함. 추출한 자료 내용에는 인적특성, 가구특성, 급여액, 가구소득 등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됨.
- 분석대상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 관찰기간 동안 노인일자리 참가자는 총 1,991,525명으로 '19년과 '20년 말, 그리고 '21년 6월말 기준 각각 30.9 %, 34.8%, 그리고 34.3%로 나타났음. 각 관찰시점별 구체적인 수치는 각각 615,541명, 692,301명, 그리고 683,683명임.
 - 대기자는 관찰기간 동안 총 221,997명으로 '19년과 '20년 말, 그리고 '21년 6월말 기준 각각 21.9 %, 26.8%, 그리고 51.3%로 증가하는 양상임. 수치로 보면 '19년 48,688명, '20년 59,440명, 그리고 '21년 113,869명임.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21년에는 대기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30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 노인일자리 사업 미신청자자는 관찰기간 동안 총 14,577,505명으로 '19년 32.0%, '20년 33.5%, 그리고 '21년 34.5%임. 수치로 보자면 '19년 4,659,366명, '20년 4,883,761명, 그리고 '21년 5,034,37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표 3-1〉 관찰시점별 분석대상 규모

구분		2019년 12월말	2020년 12월말	2021년 6월말	계
참가자	빈도	615,541	692,301	683,683	1,991,525
	%	30.9	34.8	34.3	(100)
대기자	빈도	48,688	59,440	113,869	221,997
	%	21.9	26.8	51.3	(100)
미신청자	빈도	4,659,366	4,883,761	5,034,378	14,577,505
	%	32.0	33.5	34.5	(100)

34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 참가자와 대기자에 한정하여 동거 가족 수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음¹⁾.

- 현재의 자료에서는 대기자는 모두 동거 가족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인일자리 참가자의 경우에는 0명, 즉 동거 가족수가 없는 경우가 '19년 52.3%, '20년 60.1%, '21년 64.2%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그 다음으로 동거 가족수가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19년 29.6%, '20년 24.8%, '21년 22.4%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으로, 요컨대 노인일자리 참가자 중에는 동거 가족 수가 없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남.

〈표 3-5〉 동거 가족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참가자	대기자	참가자	대기자	참가자	대기자
0명	321,651	48688	416,376	59440	438,945	113869
(%)	52.3	100	60.1	100	64.2	100
1명	182,260	0	171,578	0	153,062	0
(%)	29.6	0	24.8	0	22.4	0
2명	55,854	0	52,507	0	46,321	0
(%)	9.1	0	7.6	0	6.8	0
3명이상	55,705	0	51,776	0	45,296	0
(%)	9.1	0	7.5	0	6.6	0
없음	71	0	64	0	59	0
(%)	0.0	0	0.0	0	0.0	0
계	615,541	48688	692,301	59440	683,683	113869
(%)	100	100	100	100	100	100

1) 위의 가구유형 현황과 비교할 때 수치의 정합성이 맞지 않음에 유의

○ 마찬가지로 참가자와 대기자에 한정하여 세대 구성 양상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음²⁾.

- 노인일자리 참가자는 세 관찰기간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세대가 '독거노인 가구'였음. 즉, '독거노인 가구'인 경우에 '19년 38.3%, '20년 37.2%, '21년 3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었음.
- 그 다음은 '노인부부 가구'로 '19년 32.6%, '20년 33.6%, '21년 34.1%였으며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그 다음은 경제력이 있는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세대로 '19년 26.0%, '20년 26.1%, '21년 25.8%로 나타남.
- 반면, 대기자의 경우는 노인부부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 관찰기간 동안 약 35~36%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독거노인가구로 약 30~33%,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약 29~30%를 차지하였음.

〈표 3-6〉 세대구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참가자	대기자	참가자	대기자	참가자	대기자
가족(경제력무)동거	16,350	1,161	18,658	1,520	18,856	2,815
(%)	2.7	2.4	2.7	2.6	2.8	2.5
가족(경제력유)동거	159,789	14,576	180,769	16,614	176,077	32,648
(%)	26.0	29.9	26.1	28.0	25.8	28.7
기타	2,673	581	2,262	263	1,953	282
(%)	0.4	1.2	0.3	0.4	0.3	0.3
노인부부+자녀	251	35	93	14	52	5
(%)	0.0	0.1	0.0	0.0	0.0	0.0
노인부부가구	200,339	17,142	232,258	21,100	233,382	41,981
(%)	32.6	35.2	33.6	35.5	34.1	36.9
독거노인가구	235,537	14,920	257,411	19,649	252,055	35,652
(%)	38.3	30.6	37.2	33.1	36.9	31.3
세대구성_알수없음	602	273	850	280	1308	486
(%)	0.1	0.6	0.1	0.5	0.2	0.4
계	615,541	48,688	692,301	59,440	683,683	113,869
%	100	100	100	100	100	100

2) 위의 가구유형 현황과 비교할 때 수치의 정합성이 맞지 않음에 유의

38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4) 소득인정액 현황

- 세 집단의 평균 소득인정액을 비교한 결과 대기자의 소득인정액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미신청자, 참가자 순이었음.
- '19년 기준 참가자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약 43만원에서 '20년 약 45만원, '21년에는 약 51만원으로 점점 증가하는 양상으로 확인됨. 이러한 양상은 대기자도 마찬가지인데, '19년 약 63만원, '20년 약 65만원, '21년에는 약 79만원임.
- 미신청자는 '19년 약 52만원, '20년 약 55만원, '21년 약 70만원이었으며, 세 집단 중 표준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9〉 소득인정액 현황

(단위: 원, 명)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참가자	대기자	미신청자	참가자	대기자	미신청자	참가자	대기자	미신청자
평균	432,933	632,501	516,709	445,957	646,340	550,274	510,046	789,375	642,623
표준편차	455,746	484,973	551,398	466,373	503,501	593,285	537,199	623,841	697,378
최소	0	0	0	0	0	0	0	0	0
최대	3,160,195	3,008,240	10,936,630	23,041,293	3,993,547	85,388,140	44,979,454	50,660,635	333,149,333
계	615,541	48,688	4,656,755	692,301	59,440	4,874,912	683,683	113,869	5,032,194

※ 미신청자의 경우, 값없는 사례는 제외함.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임.

2.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특성

1) 참여 사업의 현황

○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만 대상으로 참여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익활동에 참여한 참가자가 대부분인데 '19년 87.0%, '20년 87.6%, '21년 91.2%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형은 '19년 3.6%, '20년 5.2%, '21년 5.3%로 근소하게 증가하는 양상이며, 시장형은 '19년 6.4%, '20년 5.4%, '21년 2.9%로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남. 재능나눔활동 역시 '19년 3.1%에서 '20년 1.5%, '21년 0.6%로 감소추세임.
- 요컨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절대다수가 공익활동형에 참가하고 있으며 타 사업 유형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매우 적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함. 이는 참여사업의 유형이 골고루 분포되지 않고 불균형한 상태임을 의미함.

〈표 3-10〉 참여사업 유형 현황

(단위: 명, %)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공익활동형	535,242	606,471	623,563
(%)	87.0	87.6	91.2
사회서비스형	21,979	35,847	36,226
(%)	3.6	5.2	5.3
시장형	39,289	39,504	19,534
(%)	6.4	5.7	2.9
재능나눔활동	19,031	10,479	4,360
(%)	3.1	1.5	0.6
계	615,541	692,301	683,683
(%)	100	100	100

40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 노인 일자리사업에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노인 일자리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19년에 45.0%로 절반이 되지 않은 비중임. 그러나 '20년 46.5%, '21년 53.0%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는 곧 연속적인 참여 없이 중단하는 비중이 '19년 55.0%에서 '21년 46.8%로 점차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표 3-11〉 연속참여 여부 현황

(단위: 명, %)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연속참여	299,121	349,519	424,581
(%)	45.0	46.5	53.2
불연속참여	365,108	402,222	372,971
(%)	55.0	53.5	46.8
계	664,229	751,741	797,552
(%)	100	100	100

○ 노인 일자리사업 참가자들의 연 평균 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년 평균 약 250만원, '20년 평균 약 260만원, 그리고 '21년 6월말 기준 110만원으로 나타남. '19년과 '20년만 비교한다면 약 1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2〉 급여수준(연소득) 현황

(단위: 원, 명)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평균	2,502,346	2,643,632	1,123,729
표준편차	1,225,224	1,134,708	457,932
최소	2,600	4,50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계(명)	664,229	751,741	797,552

2) 주요 특성에 따른 급여수준 및 소득인정액 현황

(1) 개인특성

○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의 개인특성에 따른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세 개의 관찰기간 동안 모두 여성의 급여가 남성의 급여보다 높게 나타났음. 즉 여성이 '19년에는 255,595원, '20년에는 108,362원, 그리고 '21년에는 29,533원 더 높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성별 간 급여 차이는 급속하게 감소하는 양상임.
- 여성이 남성보다 급여액이 높다는 것은 여성의 일자리 참여일수와 시간이 많으며 일자리 사업에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함. 하지만 이러한 차이의 감소는 최근 남성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가 적극적임을 말해준다고 하겠음.

〈표 3-13〉 성별에 따른 급여액 현황

(단위: 원, 명)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남성	평균	2,347,380	2,579,674	1,104,334
	표준편차	1,191,149	1,145,984	454,061
	최소	6,400	8,59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소계(명)	180,723	202,679	197,388
여성	평균	2,602,975	2,688,036	1,133,867
	표준편차	1,225,037	1,127,051	459,319
	최소	2,600	4,500	9,000
	최대(명)	30,295,000	29,805,210	11,163,430
	소계	434,818	489,622	486,295
계	평균	2,527,932	2,656,312	1,125,340
	표준편차	1,220,746	1,133,699	458,002
	최소	2,600	4,50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계(명)	615,541	692,301	683,683

42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 한편, 성별에 따른 소득인정액 현황을 보면 노인일자리 참가자와 대기자, 미신청자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소득인정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참가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는 양상이며, '21년 6월말 기준 남성 참가자는 약 64만원, 여성 참가자는 약 45만원으로 남성의 소득인정액이 더 높았음. 연도별로 보면 '19년에 약 18만7천원, '21년에 약 19만원으로 성별 소득인정액 차이가 다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남.
 - 상기한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 참가자 간에 성별 급여차이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소득인정액은 근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임.
- 이러한 소득인정액의 양상은 노인일자리 참가자 뿐만 아니라 대기자와 미신청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즉 소득인정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즉, '21년 6월말 기준으로 보면 대기자의 경우에는 약 28만원, 미신청자의 경우에는 약 32만원의 차이를 보였음.
- 소득인정액의 수준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참가자가 가장 낮으며, 그 다음이 미신청자, 그리고 대기자의 순으로 그 금액이 높았음. '21년 6월말 기준 남성에 한정해서 본다면 참가자의 경우 약 65만원, 대기자의 경우 약 96만원, 그리고 미신청자는 약 83만원이었음.

〈표 3-14〉 성별에 따른 소득인정액 현황

(단위: 원, 명)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참가자	대기자	미신청자	참가자	대기자	미신청자	참가자	대기자	미신청자	
남성	평균	565,486	776,942	682,798	575,901	803,100	716,418	645,557	960,545	830,971
	표준편차	509,734	510,777	590,793	518,774	533,285	634,278	595,275	656,016	764,141
	최대	0	0	0	0	0	0	0	0	0
	최소	3,160,195	2,190,956	9,240,000	23,041,293	3,629,398	85,388,140	44,979,454	50,660,635	333,149,333
	소계(명)	180,723	18,199	1,844,940	202,679	22,281	1,964,004	197,388	43,782	2,049,539
여성	평균	377,839	546,284	407,732	392,166	552,344	438,176	455,042	682,448	513,200
	표준편차	419,168	447,193	494,509	431,569	459,820	535,579	501,406	577,687	614,946
	최대	0	0	0	0	0	0	0	0	0
	최소	2,989,500	3,008,240	10,936,630	5,795,118	3,993,547	85,388,140	44,296,674	50,660,635	86,115,953
	소계(명)	434,818	30,489	2,811,815	489,622	37,159	2,910,908	486,295	70,087	2,982,655
계	615,541	48,688	4,656,755	692,301	59,440	4,874,912	683,683	113,869	5,032,194	

※ 미신청자의 경우, 값없는 사례는 제외함.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임.

-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을 연령별로 분류할 때 급여액은 다소 차이를 보였음.
- 연령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볼 때, 70세~75세 미만의 경우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았는데, '19년 약 255만원, '20년 약 270만원, '21년 약 115만원으로 확인되었음. '21년을 제외하면 '19년과 '20년 간에 연 급여에서 약 14만원 정도의 증가가 나타남. 그 다음으로 75세에서 80세 미만인 집단의 경우의 급여가 높아서 '19년에는 약 250만원, '20년에 약 260만원, '21년에 약 110만원으로 나타났음.
 - 70세 미만인 집단의 급여는 '19년과 '20년에 타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21년 6월말 기준으로 약 122만원으로 가장 높은 액수를 보임. 코로나19 이후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경험한 이들이 참여일수를 증가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고려됨.
 - 70~75세 미만인 집단과 70세 미만인 집단 간의 급여 차이가 '19년에 약 6만원, '20년에는 약 2만원으로 그 차이가 좁혀지며 '21년 6월 기준에는 70세 미만인 경우 6만원이 더 많아지는 양상임.

44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표 3-15〉 연령에 따른 급여액 현황

(단위: 원, 명)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70세미만	평균	2,491,778	2,671,161	1,216,406
	표준편차	1,622,001	1,499,939	643,063
	최소	2,600	8,84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소계(명)	74,161	84,248	91,754
70세~75세 미만	평균	2,552,284	2,693,384	1,152,670
	표준편차	1,362,264	1,237,243	508,406
	최소	8,820	4,500	8,720
	최대	24,427,000	29,805,210	10,615,660
	소계(명)	164,921	187,379	188,492
75세~80세 미만	평균	2,537,840	2,653,843	1,103,689
	표준편차	1,123,485	1,037,569	401,951
	최소	6,000	8,590	9,000
	최대	22,712,510	22,948,040	9,751,500
	소계(명)	218,207	232,938	219,038
80세 이상	평균	2,505,835	2,615,709	1,077,810
	표준편차	941,963	929,124	328,844
	최소	4,970	9,000	9,000
	최대	23,505,496	22,239,660	7,355,700
	소계(명)	158,252	187,736	184,399
계	평균	2,527,932	2,656,312	1,125,340
	표준편차	1,220,746	1,133,699	458,002
	최소	2,600	4,50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계(명)	615,541	692,301	683,683

- 연령에 따른 소득인정액 현황을 보면 급여액 수준과는 달리 연령이 증가할 수록 소득인정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70~85세의 노인일자리 급여가 가장 높았으나, 소득인정액은 70세 미만인 가장 높았으며, 80세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남. 예컨대, '21년 6월말의 경우 노인일자리 참가자 중 70세 미만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약 76만원이었으며, 70~75세 미만은 약 63만원, 75~80세 미만은 약 47만원, 그리고 80세 이상은 약 30만원으로 감소 추세가 뚜렷하였음. 이러한 양상은 대기자와 미신청자 모두 유사하였음.
- 소득인정액 수준은 대기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미신청자, 그리고 참가자의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서 대기자가 가장 높았으나 그 다음으로는 참가자, 그리고 미신청자가 가장 낮은 금액을 보였음. 예컨대 '21년 6월말 기준 80세 이상의 경우, 참가자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약 31만원, 대기자의 소득인정액은 약 56만원, 그리고 미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은 약 30만원이었음. 이에 따라 80세 이상의 노인일자리 참가자는 노인일자리 참여 여부에 따라서 소득수준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됨.

46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표 3-16〉 연령에 따른 소득인정액 현황

(단위: 원, 명)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참가자	대기자	미신청자	참가자	대기자	미신청자	참가자	대기자	미신청자	
70세 미만	평균	652,082	772,352	737,966	686,340	785,888	776,107	764,018	931,659	896,740
	표준편차	526,034	525,214	594,995	556,678	557,314	653,558	638,727	709,776	739,105
	최대	0	0	0	0	0	0	0	0	0
	최소	2,309,281	3,008,240	10,936,630	23,041,293	3,993,547	85,388,140	44,296,674	50,660,635	93,634,671
	소계(명)	74,161	8,579	1,295,995	84,248	10,871	1,437,327	91,754	24,205	1,528,798
70세~75세 미만	평균	544,549	720,937	643,042	563,184	740,577	675,492	628,513	876,668	779,110
	표준편차	479,938	492,153	557,408	491,727	513,676	593,938	559,515	646,763	683,718
	최대	0	0	0	0	0	0	0	0	0
	최소	3,160,195	2,190,956	6,382,790	3,914,680	3,629,398	49,750,216	7,612,127	50,660,635	55,879,747
	소계(명)	164,921	14,267	1,072,433	187,379	17,169	1,121,936	188,492	35,522	1,144,372
75세~80세 미만	평균	401,041	590,456	469,801	414,002	615,007	498,156	473,104	740,765	587,258
	80세 이상	421,050	449,796	498,851	424,520	464,350	536,257	497,421	547,972	710,951
	최대	0	0	0	0	0	0	0	0	0
	최소	2,828,415	2,308,267	7,496,850	3,119,834	2,577,843	85,388,140	44,979,454	3,281,937	333,149,333
	소계(명)	218,207	15,837	956,277	232,938	17,855	926,373	219,038	32,229	911,516
80세 이상	평균	257,888	453,030	233,406	260,728	456,191	250,262	306,460	562,196	301,196
	표준편차	355,234	423,698	383,859	350,489	424,554	399,148	404,400	506,337	473,787
	최대	0	0	0	0	0	0	0	0	0
	최소	2,989,500	2,177,967	6,206,788	5,795,118	2,318,662	6,939,620	4,835,092	2,702,744	9,514,104
	소계(명)	158,252	10,005	1,332,050	187,736	13,545	1,389,276	184,399	21,913	1,447,508
계	615,541	48,688	4,656,755	692,301	59,440	4,874,912	683,683	113,869	5,032,194	

※ 미신청자의 경우, 값없는 사례는 제외함.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임.

(2) 가구특성

○ 가구 유형에 따른 급여액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볼 때, '19년과 '20년에는 단독가구에 속한 노인의 평균 급여액이 각각 약 259만원, 약 267만원으로 부부가구에 속한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가구에 속한 노인의 급여와 각각 약 12만원과 약 2만원의 차이로, 그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차이는 '21년 6월말 기준 평균 급여에서 역전되는데, 부부가구에 속한 노인의 평균 급여액은 약 113만원으로 단독가구에 속한 노인의 평균 급여액인 112만원과 약 1만 4천원의 차이를 보임.

〈표 3-17〉 가구 유형에 따른 급여액 현황

(단위: 원, 명)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단독	평균	2,586,882	2,668,343	1,118,577
	표준편차	1,168,002	1,088,393	438,055
	최소	2,600	4,500	8,720
	최대	30,295,000	29,805,210	10,615,660
	소계(명)	321,470	358,488	351,448
부부	평균	2,463,490	2,643,391	1,132,495
	표준편차	1,272,795	1,180,284	478,095
	최소	6,000	8,59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소계(명)	294,071	333,813	332,235
전체	평균	2,527,932	2,656,312	1,125,340
	표준편차	1,220,746	1,133,699	458,002
	최소	2,600	4,50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계(명)	615,541	692,301	683,683

48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 가구 유형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 급여의 차이가 점차 감소하는 것과 달리 소득인정액은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 참가자와 대기자, 그리고 미신청자는 모두 단독가구에 속한 경우보다 부부가구에 속한 경우의 소득인정액이 모든 관찰기간 동안 더 높게 나타났음. 노인일자리 참가자만 한정할 때 양 집단의 차이는 '19년 약 40만원, '20년 약 41만원, '21년 약 47만원으로 점차 증가함. 이러한 증가추세는 대기자 및 미신청자 집단에서도 유사하였음.
 - '21년 6월 기준, 대기자 집단에서 부부가구와 단독가구간 소득인정액 차이가 약 60만원이었으며, 미신청자 집단에서는 약 70만원의 차이를 보였음. 이러한 차이는 미신청자 집단에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대기자 집단, 그리고 참가자 집단 순이었음.
 - 참가자 집단에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에 노인일자리 사업 급여 차이가 점차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구 유형에 따른 경제적 상황의 차이는 점차 증가한다고 하겠음.

〈표 3-18〉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인정액 현황

(단위: 원, 명)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참가자	대기자	미신청자	참가자	대기자	미신청자	참가자	대기자	미신청자	
단독	평균	241,069	375,227	226,215	247,211	378,333	241,185	283,760	460,123	280,232
	표준편차	273,365	299,059	308,079	277,859	307,964	331,652	327,732	357,054	436,487
	최대	0	0	0	0	0	0	0	0	0
	최소	2,989,500	3,008,240	7,496,850	3,914,680	3,948,299	59,133,373	44,979,454	2,815,420	333,149,333
	소계(명)	321,470	22,401	2,301,836	358,488	27,801	2,388,271	351,448	50,660	2,448,833
부부	평균	642,672	851,743	800,654	659,393	881,835	847,136	749,419	1,053,260	986,143
	표준편차	518,496	504,921	587,659	529,337	523,803	636,022	607,262	665,129	724,052
	최대	0	0	0	0	0	0	0	0	0
	최소	3,160,195	2,391,375	10,936,630	23,041,293	3,993,547	85,388,140	44,296,674	50,660,635	93,634,671
	소계(명)	294,071	26,287	2,354,919	333,813	31,639	2,486,641	332,235	63,209	2,583,361
계	615,541	48,688	4,656,755	692,301	59,440	4,874,912	683,683	113,869	5,032,194	

- ※ 미신청자의 경우, 값없는 사례는 제외함.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임.

- 세대 유형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 평균 급여액은 다음과 같음.
-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부부 가구에 속한 노인의 평균 급여액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는 점임. 즉 이 가구에 속한 경우 '19년 약 150만원, '20년 약 180만원, '21년 약 96만원으로, 전체 평균 급여와 각각 약 97만원, 87만원, 160만원의 큰 차이를 보였음.
 - 가장 높은 급여액을 보인 세대는 독거노인 가구인데 '19년과 '20년에 평균 급여가 각각 약 260만원, 약 268만원이었음. 이 금액은 가장 낮은 급여액을 보인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부부가구와 각각 약 100만원과 약 90만원의 차이임. 다만 독거노인 가구는 '21년에 평균 급여가 약 112만원으로, 전체 평균 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21년에는 경제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의 평균 급여가 약 115만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독거노인 가구의 평균 급여보다 약 19만원이, 전체 평균 급여보다 약 2만원이 높은 액수임.

50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표 3-19〉 세대구성에 따른 급여액 현황

(단위: 원, 명)

연령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가족 (경제력무) 동거	평균	2,543,544	2,648,886	1,148,817
	표준편차	1,329,884	1,198,751	504,427
	최소	9,000	9,000	9,000
	최대	23,505,496	21,447,250	10,615,660
	소계(명)	16,350	18,658	18,856
가족 (경제력유) 동거	평균	2,503,817	2,620,101	1,121,528
	표준편차	1,238,098	1,148,663	455,871
	최소	4,970	8,590	6,110
	최대	22,712,510	30,821,305	13,299,588
	소계(명)	159,789	180,769	176,077
기타	평균	2,214,837	2,428,953	1,102,516
	표준편차	1,273,946	1,200,388	476,333
	최소	16,700	9,000	18,000
	최대	8,623,745	10,740,450	4,436,400
	소계(명)	2,673	2,262	1,953
노인부부 +자녀	평균	1,530,217	1,774,807	958,833
	표준편차	1,158,316	1,359,060	632,978
	최소	39,000	20,000	120,000
	최대	7,388,365	6,392,520	2,865,680
	소계(명)	251	93	52
노인부부 가구	평균	2,426,563	2,627,754	1,127,107
	표준편차	1,268,351	1,167,675	469,267
	최소	6,000	9,000	9,000
	최대	37,578,806	34,195,146	11,229,400
	소계(명)	200,339	232,258	233,382
독거노인 가구	평균	2,569,054	2,678,108	1,120,861
	표준편차	1,163,789	1,085,654	444,004
	최소	2,600	4,500	9,000
	최대	30,222,160	24,197,905	10,615,660
	소계(명)	235,537	257,411	252,055
세대구성_ 알수없음	평균	1,794,879	2,097,233	1,046,338
	표준편차	1,428,420	1,401,662	557,073
	최소	20,000	20,000	18,000
	최대	7,815,610	12,103,100	6,045,400
	소계(명)	602	850	1,308
계	평균	2,502,346	2,643,632	1,123,729
	표준편차	1,225,224	1,134,708	457,932
	최소	2,600	4,50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계(명)	615,541	692,301	683,683

○ 동거 가족수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 평균 급여액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일관된 양상을 보기가 어려운데, '19년의 경우에 동거 가족이 3명 이상인 노인의 급여액이 평균 약 253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이는 전체 평균보다 약 2만 4천원이 높은 금액이며, 가장 낮은 급여액인 동거인이 1명인 노인의 약 246만원보다 약 6만원이 높음.
- '20년에는 '값없음'을 제외하고 '19년에 가장 낮은 급여액을 보였던 동거인이 1명인 노인의 평균 급여가 약 270만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동거 가족이 없는 노인의 평균 급여액 약 260만원보다 10만원이 높은 액수임.
- '21년 6월말 기준, 동거인이 2명인 노인의 평균 급여액이 약 114만원으로 타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는데 이 급여액은 동거인이 없는 노인의 평균 급여액인 약 112만원과 약 2만 5천원의 차이를 보임.

〈표 3-20〉 동거 가족수에 따른 급여액 현황

(단위: 원, 명)

연령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0명	평균	2,521,677	2,600,292	1,117,188
	표준편차	1,201,712	1,148,946	465,627
	최소	2,600	4,50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1,229,400
	소계(명)	321,651	416,376	438,945
1명	평균	2,464,235	2,715,587	1,135,261
	표준편차	1,251,973	1,103,838	442,536
	최소	4,970	9,000	9,000
	최대	23,780,612	22,268,040	9,717,230
	소계(명)	182,260	171,578	153,062
2명	평균	2,491,006	2,708,565	1,142,613
	표준편차	1,267,985	1,140,982	458,155
	최소	6,400	8,840	9,000
	최대	21,667,200	30,821,305	13,299,588
	소계(명)	55,854	52,507	46,321
3명이상	평균	2,526,811	2,687,755	1,128,824
	표준편차	1,223,956	1,096,348	431,346
	최소	16,700	9,000	9,000
	최대	22,140,620	20,782,575	10,239,237
	소계(명)	55,705	51,776	45,296
값없음	평균	2,487,525	2,736,112	1,128,135
	표준편차	1,611,394	1,212,525	586,934
	최소	270,000	572,000	72,000
	최대	12,898,750	9,940,000	4,432,680
	소계(명)	71	64	59
계	평균	2,502,346	2,643,632	1,123,729
	표준편차	1,225,224	1,134,708	457,932
	최소	2,600	4,50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계(명)	615,541	692,301	683,683

(3) 지역규모

○ 지역 규모에 따른 급여액을 보면 다음과 같음.

- '19년에는 대도시에 거주한 노인들의 급여가 평균 약 25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에 거주한 노인들의 급여는 가장 낮아서 평균 약 240만원 정도로 약 13만원의 차이를 보였음.
- '20년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급여가 가장 높아서 약 270만원으로 전년인 '19년에 비해 약 28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급여는 약 263만원으로 농어촌 평균 급여와 약 7만원의 차이를 보임.
- '21년 6월말 기준 평균 급여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약 11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약 109만원으로 약 6만원의 차이를 보임.
- 요건데 지역에 따른 급여액의 차이는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

〈표 3-21〉 지역 규모에 따른 급여액 현황

(단위: 원, 명)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대도시	평균	2,553,492	2,635,202	1,119,529
	표준편차	1,238,905	1,182,076	493,188
	최소	2,600	4,50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소계(명)	227,892	255,186	248,724
중소도시	평균	2,558,431	2,648,819	1,149,324
	표준편차	1,266,364	1,149,291	459,045
	최소	8,820	8,840	9,000
	최대	30,295,000	29,805,210	11,163,430
	소계(명)	254,769	288,673	285,912
농어촌	평균	2,425,621	2,707,172	1,089,031
	표준편차	1,087,540	1,009,958	386,790
	최소	9,000	9,000	9,000
	최대	21,138,312	16,196,110	7,456,000
	소계(명)	132,880	148,442	149,047
전체	평균	2,527,932	2,656,312	1,125,340
	표준편차	1,220,746	1,133,699	458,002
	최소	2,600	4,50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계(명)	615,541	692,301	683,683

○ 지역 규모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참가자의 경우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평균 소득인정액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았음. 반면, 대기자와 미신청자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평균 소득인정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이와 같은 양상은 관찰기간 동안 모두 일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이, 농어촌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이 노인일자리에 참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예컨대, '21년 6월 기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중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평균 소득인정액이 약 40만원인 반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평균 소득인정액이 약 56만원으로 약 7만원의 차이를 보였음. 반면 대기자는 농어촌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약 3만원 많았고 미신청자 중에는 약 2만원이 더 많게 나타나 참가자의 양상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22〉 지역 규모에 따른 소득인정액 현황

(단위: 원, 명)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참가자	대기자	미신청자	참가자	대기자	미신청자	참가자	대기자	미신청자	
대 도시	평균	412,930	644,394	519,057	432,655	659,724	554,420	490,152	800,898	645,871
	표준편차	446,620	492,434	553,194	464,139	512,713	603,845	541,858	591,793	724,498
	최대	0	0	0	0	0	0	0	0	0
	최소	2,588,738	3,008,240	10,936,630	3,058,745	3,993,547	85,388,140	44,979,454	4,370,839	333,149,333
	소계(명)	227,892	18,215	1,867,182	255,186	22,840	1,963,467	248,724	49,404	2,019,605
중 소 도시	평균	427,518	622,177	517,757	441,980	644,632	552,575	500,548	781,993	644,247
	표준편차	457,254	485,396	555,741	468,667	507,946	594,252	530,658	589,789	686,022
	최대	0	0	0	0	0	0	0	0	0
	최소	2,989,500	2,189,083	7,369,217	23,041,293	3,948,299	61,778,562	3,633,243	3,766,192	86,115,953
	소계(명)	254,769	23,267	2,100,203	288,673	28,455	2,216,698	285,912	51,822	2,304,368
농 어 촌	80세 이상	465,242	463,453	532,831	464,368	458,379	558,723	538,625	842,567	653,633
	최대	0	0	0	0	0	0	0	0	0
	최소	3,160,195	2,308,267	9,240,000	5,795,118	2,874,639	19,487,375	7,612,127	50,660,635	45,235,070
	소계(명)	132,880	7,206	689,370	148,442	8,145	694,747	149,047	12,643	708,221
	계	615,541	48,688	4,656,755	692,301	59,440	4,874,912	683,683	113,869	5,032,194

※ 미신청자의 경우, 값없는 사례는 제외함.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임.

(4) 참여사업

- 참여사업에 따른 급여수준은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한 노인의 급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시장형, 공익활동형, 그리고 재능나눔활동형의 순이 었음.
- 즉 사회서비스형은 '19년 평균 약 593만원, '20년에는 약 452만원, '21년에는 226만원으로 나타났음. 시장형은 '19년 약 288만원, '20년 266만원, '21년 약 146만원임.
- 공익활동형은 '19년 약 243만원, '20년 약 258만원, '21년에는 106만원이었으며 재능나눔활동형은 '19년 약 72만원, '20년 약 60만원, '21년 약 25만원으로 나타남.
- '21년의 경우 6월말 기준의 수치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19년과 '20년에는 공익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평균 급여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3〉 참여사업에 따른 급여액 현황

(단위: 원, 명)

연령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공익활동형	평균	2,427,093	2,581,303	1,055,350
	표준편차	818,061	845,053	290,563
	최소	9,000	9,000	9,000
	최대	9,332,100	8,307,810	3,255,658
	소계(명)	535,242	606,471	623,563
사회서비스형	평균	5,929,515	4,519,074	2,255,899
	표준편차	1,990,975	1,912,391	634,964
	최소	9,000	9,000	9,110
	최대	8,632,800	10,383,440	4,602,970
	소계(명)	21,979	35,847	36,226
시장형	평균	2,875,502	2,662,979	1,458,619
	표준편차	1,914,354	1,967,800	1,043,513
	최소	2,600	4,50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소계(명)	39,289	39,504	19,534
재능나눔 활동형	평균	717,942	600,078	248,665
	표준편차	245,265	226,718	57,998
	최소	10,000	10,000	10,000
	최대	3,726,000	3,722,700	794,000
	소계(명)	19,031	10,479	4,360
계	평균	2,527,932	2,656,312	1,125,340
	표준편차	1,220,746	1,133,699	458,002
	최소	2,600	4,50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계(명)	615,541	692,301	683,683

- 참여사업 중에 급여수준이 높은 순서가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공익활동형, 재능나눔활동의 순이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은 순서는 재능나눔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공익활동형 순이었음.
- 즉, '21년 6월말 기준으로 볼 때 재능나눔활동형에 참여한 노인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약 110만원, 시장형에 참여한 노인은 약 78만원,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한 노인은 약 67만원, 그리고 공익활동에 참여한 노인은 약 49만원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양상을 고려한다면 공익활동형에 참여한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면서 급여액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에 속한다고 하겠음.

〈표 3-24〉 참여사업에 따른 소득인정액 현황

(단위: 원, 명)

연령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공익활동형	평균	402,282	417,299	487,828
	표준편차	434,837	446,267	519,713
	최소	0	0	0
	최대	3,160,195	23,041,293	44,979,454
사회서비스형	소계(명)	535,242	606,471	623,563
	평균	502,761	577,214	678,550
	표준편차	455,764	505,602	631,180
	최소	0	0	0
시장형	최대	2,185,603	2,887,909	44,296,674
	소계(명)	21,979	35,847	36,226
	평균	607,605	645,791	775,668
	표준편차	516,987	546,471	640,514
재능나눔활동형	최소	0	0	0
	최대	2,451,973	3,220,849	7,612,127
	소계(명)	39,289	39,504	19,534
	평균	853,732	902,182	1,097,654
계	표준편차	579,941	614,909	711,696
	최소	0	0	0
	최대	2,989,500	2,696,817	2,783,446
	소계(명)	19,031	10,479	4,360
계	평균	2,527,932	2,656,312	1,125,340
	표준편차	1,220,746	1,133,699	458,002
	최소	2,600	4,50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계(명)	615,541	692,301	683,683

※ 미신청자의 경우, 값없는 사례는 제외함.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임.

(5) 공공부조 수급여부

- 공공부조 수급 여부에 따른 급여수준을 보면 각 관찰연도에 따라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는 않음.
- '19년의 경우 공공부조 수급,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평균 급여액이 약 255만원으로 비수급자에 비해 약 2만 1천원이 높았음. '20년의 경우에는 비수급 상태인 노인의 평균 급여액이 약 266만원으로 더 높아서 공공부조 수급상태인 노인의 평균 급여와 약 6만원 5천원의 차이를 보였음.
 - '21년에도 비수급 상태인 노인의 평균 급여가 약 113만원으로 수급상태인 노인의 급여인 약 102만원과 약 11만원의 차이를 보였음.

〈표 3-25〉 공공부조에 따른 급여액 현황

(단위: 원, 명)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비수급	평균	2,526,175	2,661,624	1,134,880
	표준편차	1,236,553	1,142,446	460,280
	최소	2,600	4,50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소계(명)	565,912	635,452	625,707
공공부조 수급	평균	2,547,968	2,596,931	1,022,385
	표준편차	1,023,187	1,029,037	419,061
	최소	9,000	9,000	9,000
	최대	18,303,200	18,760,560	6,815,660
	소계(명)	49,629	56,849	57,976
계	평균	2,527,932	2,656,312	1,125,340
	표준편차	1,220,746	1,133,699	458,002
	최소	2,600	4,50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계(명)	615,541	692,301	683,683

- 공공부조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인정액은 눈에 띄게 높은 차이를 보여 '19년과 '20년에는 약 37만원, '21년에는 약 44만원의 차이로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음.
- 반면, 상기한 노인일자리사업 급여액과 비교한다면 '19년에는 비수급자의 급여액이 약 2만원 낮았으나 '21년에는 약 6만원이 더 많았고 '21년 6월 현재 비수급자의 노인일자리 사업 급여액이 수급자의 급여액보다 약 11만원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비수급자의 노인일자리 사업 급여액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공공부조 수급자가 낮은 소득인정액을 급여액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있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됨.

〈표 3-26〉 공공부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현황

(단위: 원, 명)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비수급	평균	462,489	476,477	547,371
	표준편차	461,803	472,834	544,689
	최소	0	0	0
	최대	3,160,195	23,041,293	44,979,454
	소계(명)	565,912	635,452	625,707
공공부조 수급	평균	95,907	104,801	107,217
	표준편차	144,171	151,242	154,314
	최소	0	0	0
	최대	2,007,590	2,199,210	2,200,000
	소계(명)	49,629	56,849	57,976
계	평균	2,502,346	2,643,632	1,123,729
	표준편차	1,225,224	1,134,708	457,932
	최소	2,600	4,50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계(명)	615,541	692,301	683,683

※ 미신청자의 경우, 값없는 사례는 제외함.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임.

(6) 연속참여 여부

○ 연속참여 여부에 따른 급여액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연속적으로 참여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급여액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19년, '20년, '21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연속해서 참여한 노인의 평균 급여액은 각각 약 277만원, 약 275만원, 약 114만원이었음. 반면 연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노인의 평균 급여는 '19년 약 230만원, '20년 약 255만원, '21년 약 110만원이었음.
- 양 집단의 급여액 차이는 '19년 약 47만원 '20년 약 20만원 '21년 약 3만원으로 점차 좁혀지고 있음.

〈표 3-27〉 연속참여 여부에 따른 급여액 현황

(단위: 원, 명)

연령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연속참여	평균	2,768,099	2,755,705	1,137,934
	표준편차	1,097,821	1,058,908	435,801
	최소	9,000	4,500	8,72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소계(명)	299,121	349,519	424,581
비연속참여	평균	2,300,896	2,554,965	1,104,703
	표준편차	1,285,917	1,196,722	491,526
	최소	2,600	8,590	6,110
	최대	30,295,000	24,197,905	10,615,660
	소계(명)	316,420	342,782	259,102
계	평균	2,527,932	2,656,312	1,125,340
	표준편차	1,220,746	1,133,699	458,002
	최소	2,600	4,50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계(명)	615,541	692,301	683,683

- 연속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양상과는 달리, 연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의 소득인정액 수준이 연속 참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음.
- 양 집단의 소득인정액 차이는 점점 증가하는 양상이었는데 즉 사업에 연속하여 참여하지 않았던 노인의 평균 소득인정액이 연속해서 참여한 노인들의 평균 소득인정액보다 '19년 약 18만원, '20년 약 20만원, 그리고 '21년 약 21만원으로 나타났음.
 - 결국 노인일자리 사업 연속 참여를 통해 낮은 소득인정액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양 집단의 급여액 차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효과도 점차 미미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8〉 연속참여 여부에 따른 소득인정액 현황

(단위: 원, 명)

연령	구분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21년 6월말
연속참여	평균	341,519	345,567	430,317
	표준편차	394,348	398,660	482,781
	최소	0	0	0
	최대	2,989,500	4,380,459	44,979,454
	소계(명)	299,121	349,519	424,581
비연속참여	평균	519,349	548,320	640,696
	표준편차	491,608	506,434	593,338
	최소	0	0	0
	최대	3,160,195	23,041,293	44,296,674
	소계(명)	316,420	342,782	259,102
계	평균	2,527,932	2,656,312	1,125,340
	표준편차	1,220,746	1,133,699	458,002
	최소	2,600	4,500	6,110
	최대	37,578,806	34,195,146	13,299,588
	계(명)	615,541	692,301	683,683

※ 미신청자의 경우, 값없는 사례는 제외함.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임.

제 4 장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급여가 가구의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4절 소결

4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급여가 <<
가구의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서론

- 이번 장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급여가 가구의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즉,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 완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임.
 - 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추출하였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의 기초연금 수급자 관련 행정자료를 결합함.
 - 2019년(12월말 기준), 2020년(12월말 기준), 그리고 2021년(6월말 기준)의 데이터를 토대로 각 조사 연도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고자 함. 빈곤 완화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빈곤율, 빈곤갭 및 빈곤갭 비율 등을 활용하였음. 분석방법으로 교차분석, 기술통계, T검정, 분산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그리고 FGT 분해 등을 이용함.
- 본 연구의 행정 데이터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와 대기자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행복e음의 행정자료를 결합하여 가구의 소득, 자산, 기초연금액 등을 파악할 수 있음.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총급여액과 사업유형 등을 행정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행정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샘플의 크기가 대규모임. 그리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한 패널자료에 비해 소득 및 자산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더욱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64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 선행연구들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다수는 빈곤층이고, 이들에게 일자리 급여는 주요 소득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였음. 그런데 소득보충기제의 한계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의 급여가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하다고 논의되고 있음(강은나 외, 2017; 손병돈 외, 2019).
-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국복지패널, 노인실태조사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이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는 조사시점의 차이, 자기보고식으로 인한 응답자의 오류 등으로 인해 연구들마다 다소 정확하지 못한 경제적 효과 및 빈곤 완화 효과를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통계자료와 행복e음의 행정 데이터를 결합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소득과 관련된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음. 즉,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함의를 행정 데이터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 연구라는 점에서 더욱 타당한 경제적 효과 및 빈곤 완화 효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제2절 분석 방법

- 본 연구에서는 크게 2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1. 소득인정액 기준

- 기초연금 산정방식을 통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변수를 이용하였음.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급여(중위 소득 50% 이하) 수준을 빈곤 기준선으로 채택하였음.
- 소득인정액 기준 빈곤 측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각 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급여(중위 소득 50%) 수준

2. 경상소득 기준

- 데이터의 경상소득³⁾ 변수(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공적이전 소득의 합)를 이용하였음. 또한 가구의 균등화 경상소득을 토대로 중위 소득의 50% 이하(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참고)를 빈곤 기준선으로 채택하였음.
- 경상소득 기준 빈곤 측정
경상소득 / 전체 가구 경상소득 중위 소득의 50% 이하

3) 본 연구의 행정 데이터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을 살펴볼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상소득을 파악하였음.

3. 방법론 개요

-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곤율, 빈곤갭, 그리고 빈곤갭 비율을 산출하였음.
 - 빈곤율은 앞서 논의한 것처럼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인 대상의 비율로 살펴보았음.
 - 빈곤갭은 빈곤선에 해당되는 소득과 빈곤선 아래에 있는 노인의 평균 소득의 차이를 의미함.
 - 빈곤갭 비율은 빈곤의 심도를 파악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음. 빈곤갭 비율이 클수록 하위 소득의 평균 소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2019년 12월말 기준, 2020년 12월말 기준, 2021년 6월말 기준의 행정 데이터⁴⁾를 통해 각 차년도에 대한 경제적 실태를 기본적으로 살펴보았음.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와 대기자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빈곤 완화 효과를 파악하였음.
- 2019년과 2020년 행정 데이터를 결합하여 두 시점 간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대기자를 비교하였고, 빈곤율과 빈곤갭 및 빈곤갭 비율을 파악하였음. 본 연구는 2019년에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자였으나, 2020년에 사업을 참가한 대상의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의 변화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4) 2020년 이후에 확산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의 영향력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임.

4. 행정 데이터의 특징

○ 본 연구에서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정 데이터의 변수 구성 및 특징은 다음의 <표 4-1>과 같음.

<표 4-1> 분석자료 변수 설명 및 특징

구분	변수	특징
인적 특성 (2019년 12월말, 2020년 12월말, 2021년 6월말)	ID	행복e음 데이터와 결합한 개별 ID
	연령	만 나이 기준
	성별	남성, 여성
	교육수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 및 대졸 이상 (결측치 존재)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변수	참여구분	대기자, 참여자
	급여(활동비)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활동비)
	사업유형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재능나눔활동
기초연금 산정 관련 변수	기초연금액	월평균 액수
	가구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거주지역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의 합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퇴직연금+별정우체국연금+산재보험의 합
	일반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선박항공기+입목재산+회원권+조합입주권+분양권+어업권의 합
	금융재산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금융정보 적용결과, 현금+수표+어음+주식+국공채+유가증권+예금+적금+부금+보험+수익증권 등의 합
	기타재산(자동차)	자동차 가액
부채총액	금융기관 대출금+금융기관 외 대출금+임대보증금+개인간 부채(법원판결문 등)+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의 합	

주1: 이외의 변수들이 있으나, 데이터의 결측치 및 이상치가 많고, 부정확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분석에 활용하지 않음.

주2: 노인일자리사업을 2회 이상 참여한 중복 대상은 참여일수가 짧은 케이스를 제거함.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의 총급여액은 중복 참여를 통한 전체 급여 액수임.

제3절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기초 분석: 빈곤과 관련된 특징을 중심으로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2019년 12월 기준 615,541명, 2020년 12월 기준 692,301명, 2021년 6월 기준 683,683명으로 조사되었음. 상대적으로 대기자는 각 조사년도 기준 48,688명, 59,440명, 113,869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표 4-2〉참조).

〈표 4-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대기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2021년 6월 기준
조사대상자	참여자	615,541 (92.7)	692,301 (92.1)	683,683 (85.7)
	대기자	48,688 (7.3)	59,440 (7.9)	113,869 (14.3)
	전체	664,229 (100.0)	751,741 (100.0)	797,552 (100.0)

주1: 2021년의 경우 2019년, 2020년과 달리 6월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결과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소득 관련 분석결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소득은 2020년에 약간 감소하다가 2021년의 경우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경상소득도 유사한 패턴으로 2020년에 감소하다가 2021년의 경우 증가하여 709,400원으로 나타났음. 상대적으로 대기자의 경우 근로소득은 조사년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경상소득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4-3〉참조).

〈표 4-3〉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가구소득(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단위: 원)

구분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2021년 6월 기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로소득	199,508.48 (sd=255,315.906)	197,116.99 (sd=300,713.476)	248,211.27 (sd=275,070.636)
	사업소득	2,968.57	3,274.30	3,228.91
	재산소득	36,837.38	14,175.67	47,068.02
	공적이전소득	354,873.62	362,638.39	410,892.19
	경상소득	594,188.05 (sd=326,167.653)	577,205.34 (sd=378,299.057)	709,400.38 (sd=364,046.514)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자	근로소득	167,878.44 (sd=406,337.470)	218,103.03 (sd=471,699.722)	246,772.80 (sd=474,570.249)
	사업소득	4,726.94	5,230.60	5,455.08
	재산소득	49,993.19	22,190.08	67,571.96
	공적이전소득	399,157.49	409,556.97	480,522.31
	경상소득	621,756.07 (sd=482,695.212)	655,080.68 (sd=570,790.695)	800,322.16 (sd=573,373.479)
전체	근로소득	197,190.00 (sd=269,403.709)	198,776.35 (sd=317,652.782)	248,005.89 (sd=311,473.936)
	사업소득	3,097.46	3,428.99	3,546.74
	재산소득	37,801.70	14,809.36	49,995.43
	공적이전소득	358,119.63	366,348.23	420,833.50
	경상소득	596,208.79 (sd=340,172.151)	583,362.93 (sd=397,488.083)	722,381.57 (sd=401,941.829)

주1: 자료의 한계로 인해 사적이전소득을 파악하지 못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경상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공적이전소득의 총합으로 측정함.

주2: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의 총합임. 또한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그리고 산재보험 액수의 총합임.

주3: 기초연금 산정기준에 따른 가구소득이므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파악되고 있음.

주4: 기초연금액수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포함이 안 되었고, 근로소득도 기초연금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가구소득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가 반영이 안 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주5: 행복e음 데이터의 경우 월평균으로 파악되고 있음.

70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 조사대상자의 가구자산에 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가구총자산은 2019년 1억여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6월 기준 약 109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대기자의 경우에는 2019년 가구총자산은 122백만 원 수준에서 2021년 141백만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음(〈표 4-4〉참조).

〈표 4-4〉 조사대상자의 평균 가구자산(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단위: 원)

구분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2021년 6월 기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일반재산	66,567,231.90	69,197,622.89	71,575,900.10
	금융재산	33,802,842.28	35,520,197.78	37,643,565.16
	자동차	626,780.52	647,846.42	634,004.05
	부채	7,722,233.68	8,231,193.18	8,294,003.22
	가구총자산	100,996,854.70	105,365,667.10	109,853,469.30
	가구순자산	93,274,621.02	97,134,473.90	101,559,466.10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자	일반재산	79,563,408.18	87,292,543.90	93,458,978.99
	금융재산	42,227,530.89	44,402,883.47	47,684,500.97
	자동차	794,305.37	815,493.05	852,287.28
	부채	7,859,129.89	9,365,884.85	10,283,673.56
	가구총자산	122,585,244.44	132,510,920.41	141,995,767.20
	가구순자산	114,726,114.55	123,145,035.56	131,712,093.70
전체	일반재산	67,519,851.90	70,628,384.42	74,700,215.89
	금융재산	34,420,372.13	36,222,549.83	39,077,141.05
	자동차	639,060.09	661,102.20	665,169.03
	부채	7,732,268.17	8,320,913.01	8,578,074.69
	가구총자산	102,579,284.10	107,512,036.50	114,442,526.00
	가구순자산	94,847,015.96	99,191,123.45	105,864,451.30

주1: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 가격을 합한 값을 가구총자산으로 측정하였음. 또한 가구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액수를 가구순자산으로 파악함.

주2: 기초연금 산정기준에 따른 가구자산이므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으로 파악되고 있음.

주3: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임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그리고 어업권의 총합임. 그리고 금융재산은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의 총합임.

주4: 부채는 금융기관대출금, 금융기관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개인간부채, 그리고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의 총합임.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2019년 432,932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510,046원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대기자의 경우 2019년에는 632,501원에서 2021년 789,374원으로 증가하였음 (<표 4-5>참조).

〈표 4-5〉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인정액

(단위: 원)

구분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2021년 6월 기준
조사 대상자	참여자	432,932.52	445,956.82	510,046.40
	대기자	632,501.41	646,339.52	789,374.86
	전체	447,560.92	461,801.04	549,927.00

주1: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따른 액수를 토대로 빈곤여부를 측정함. 이에 따라 이 분석에서는 기초연금액수와 노인일자리사업의 총급여가 월평균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았음.

주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로 파악하여 계산함. 이에 따라 가구의 전체 소득 및 자산의 액수가 아니므로 분석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유형에 관한 조사에서는 공익활동형 참여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조사년도 기준 각각 87.0%, 87.6%, 그리고 91.2%로 증가하였음. 사회서비스형은 조사년도 기준 3.6%, 5.2%, 그리고 5.3%로 나타났고, 시장형과 재능나눔활동 참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표 4-6>참조).

〈표 4-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2021년 6월 기준
공익활동형	535,242 (87.0)	606,471 (87.6)	623,563 (91.2)
사회서비스형	21,979 (3.6)	35,847 (5.2)	36,226 (5.3)
시장형	39,289 (6.4)	39,504 (5.7)	19,534 (2.9)
재능나눔활동	19,031 (3.1)	10,479 (1.5)	4,360 (0.6)
전체	615,541 (100.0)	692,301 (100.0)	683,683 (100.0)

72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평균 총급여의 경우 사회서비스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시장형, 공익활동형, 그리고 재능나눔활동형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기준 공익활동형의 총급여 평균은 약 2,581,303원, 사회서비스형은 4,519,073원, 시장형은 2,662,979원, 재능나눔활동형은 600,078원으로 나타났다(〈표 4-7〉참조).

〈표 4-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평균 총급여(활동비)

(단위: 원)

구분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공익활동형	2,427,093.45 (sd=818,060.682)	2,581,303.11 (sd=845,052.756)
사회서비스형	5,929,514.50 (sd=1,990,975.430)	4,519,073.85 (sd=1,912,390.645)
시장형	2,875,501.57 (sd=1,914,354.424)	2,662,979.31 (sd=1,967,800.139)
재능나눔활동	717,942.04 (sd=245,264.994)	600,078.46 (sd=226,717.641)
전체	2,527,932.16 (sd=1,220,746.426)	2,656,311.74 (sd=1,133,698.991)

주1: 기준 시점별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활동비)임.

주2: 2021년 데이터의 경우 6월말 기준이므로 12월 기준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함.

- 조사대상자의 빈곤여부에 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참여자의 빈곤율은 2019년 기준 93.2%, 2020년 93.5%, 2021년에는 90.8%로 나타났다. 대기자의 경우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게 나타났음(각각 88.7%, 88.9%, 82.4%) (<표 4-8>참조).

〈표 4-8〉 조사대상자의 빈곤여부(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단위: 명, %)

구분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2021년 6월 기준
조사 대상자	참여자	빈곤	573,754 (93.2)	647,473 (93.5)	620,714 (90.8)
		비빈곤	41,787 (6.8)	44,828 (6.5)	62,969 (9.2)
	대기자	빈곤	43,188 (88.7)	52,842 (88.9)	93,867 (82.4)
		비빈곤	5,500 (11.3)	6,598 (11.1)	20,002 (17.6)
	전체	빈곤	616,942 (92.9)	700,315 (93.2)	714,581 (89.6)
		비빈곤	47,287 (7.1)	51,426 (6.8)	82,971 (10.4)

- 주1: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따른 액수를 토대로 빈곤여부를 측정함. 이에 따라 이 분석에서는 기초연금액수와 노인일자리사업의 총급여가 빈곤여부 측정에 반영되지 않았음.
- 주2: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기초생활보장 월별 교육급여(중위 소득인정액 50% 이하)의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빈곤여부를 파악함.
- 주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로 파악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기준을 1인가구, 2인가구로 구분하여 빈곤여부를 파악함.
- 주4: 본 자료의 소득 및 자산 변수들의 액수는 기초연금 산정기준에 근거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구의 전체 소득 및 자산의 액수가 아니므로 분석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74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대기자의 빈곤율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음. 3개 조사연도 모두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4-9〉참조).

〈표 4-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대기자 집단별 빈곤여부의 교차분석

(단위: 명, %)

구분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x2-test
빈곤여부 (2019년 12월 기준) n=664,229	빈곤	43,188 (88.7)	573,754 (93.2)	1386.54***
	비빈곤	5,500 (11.3)	41,787 (6.8)	
빈곤여부 (2020년 12월 기준) n=751,741	빈곤	52,842 (88.9)	647,473 (93.5)	1837.38***
	비빈곤	6,598 (11.1)	44,828 (6.5)	
빈곤여부 (2021년 6월 기준) n=797,552	빈곤	93,867 (82.4)	620,714 (90.8)	7311.23***
	비빈곤	20,002 (17.6)	62,969 (9.2)	

- 추가적으로 2019년,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대기자의 근로소득과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를 합한 소득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총급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참조).

〈표 4-1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대기자 집단별 근로소득+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의 평균차이 분석

(단위: 원)

구분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t-test
근로소득+사업 총급여 (2019년 12월 기준)	2,014,541.28	4,922,033.90	-128.77***
근로소득+사업 총급여 (2020년 12월 기준)	2,617,236.34	5,021,715.58	-101.51***

주1: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자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 액수를 0으로 측정함.

주2: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을 의미함. 하지만 기초연금 산정방식에 의하면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그리고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 변수와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의 변수를 합한 액수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대기자 집단별 평균차이 분석을 진행함.

주3: 근로소득의 액수는 월평균 액수임. 이에 따라 2019년과 2020년은 12를 곱하여 연간 근로소득의 액수로 측정함.

76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대기자의 소득관련 평균차이 분석을 진행하였음. 소득인정액을 시작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를 추가할 경우 참여자와 대기자의 소득수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하였음. 주요 분석결과, 소득인정액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그러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월기준 총급여를 합한 결과, 참여자의 총소득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경상소득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상소득+기초연금액+월기준 총급여는 대기자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표 4-11〉참조).

〈표 4-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대기자 집단별 소득 관련 변수의 평균차이 분석

(단위: 원)

구분 (2019년 12월 기준)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t-test
소득인정액	632,501.41	432,932.52	87.79***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857,419.34	668,140.02	87.58***
소득인정액 + 월기준 총급여	632,501.41	643,593.53	-4.88***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월기준 총급여	857,419.34	878,801.04	-9.89***
균등화 경상소득	521,737.96	512,903.86	4.81***
균등화 경상소득 + 기초연금액	746,655.89	748,111.37	-79
균등화 경상소득 + 월기준 총급여	521,737.96	723,564.88	-109.28***
균등화 경상소득 + 기초연금액 + 월기준 총급여	746,655.89	958,772.38	-114.04***
구분 (2020년 12월 기준)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t-test
소득인정액	646,339.52	445,956.82	93.64***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885,796.60	699,100.04	93.46***
소득인정액 + 월기준 총급여	646,339.52	667,316.13	-9.80***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월기준 총급여	885,796.60	920,459.35	-17.34***
균등화 경상소득	548,851.69	496,775.14	26.88***
균등화 경상소득 + 기초연금액	788,308.77	749,918.36	19.82***
균등화 경상소득 + 월기준 총급여	548,851.69	718,134.45	-87.15***
균등화 경상소득 + 기초연금액 + 월기준 총급여	788,308.77	971,277.67	-94.22***
구분 (2021년 6월 기준)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t-test
소득인정액	789,374.86	510,046.40	142.55***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1,051,157.89	778,117.18	143.92***
소득인정액 + 월기준 총급여	789,374.86	697,603.12	46.77***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월기준 총급여	1,051,157.89	965,673.90	44.99***

- 조사대상 노인 주요 특성별 빈곤여부를 분석해 보았음. 2019년과 2020년 기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 후기노인, 부부가구, 대도시거주 노인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음. 경상소득을 통해 분석해보면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거나 거주지역의 경우 농어촌 및 중소도시 거주 노인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음(<표 4-12>, <표 4-13> 참조). 2021년의 경우 여성, 후기노인, 단독가구, 대도시 거주 노인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표 4-14>참조).

〈표 4-12〉 노인 특성별 빈곤여부(2019년 12월말 기준)

(단위: %)

구분(소득인정액)		비빈곤	빈곤
성별	남성	21.8	78.2
	여성	23.3	76.7
연령대	전기노인(65~74)	32.4	67.6
	후기노인(75~)	16.6	83.4
가구유형	단독가구	23.6	76.4
	부부가구	22.0	78.0
거주지역	농어촌 및 중소도시	23.5	76.5
	대도시	21.6	78.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	대기자	21.5	78.5
	참여자	22.9	77.1
구분(경상소득)		비빈곤	빈곤
성별	남성	20.2	79.8
	여성	29.5	70.5
연령대	전기노인(65~74)	32.7	67.3
	후기노인(75~)	22.8	77.2
가구유형	단독가구	40.2	59.8
	부부가구	12.3	87.7
거주지역	농어촌 및 중소도시	25.7	74.3
	대도시	28.5	71.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	대기자	12.5	87.5
	참여자	27.8	72.2

주1: 소득인정액을 통한 빈곤여부 측정은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월기준 총급여에서 교육급여 기준을 토대로 빈곤선 이하를 파악함.

주2: 경상소득을 통한 빈곤여부 측정은 균등화 경상소득 + 기초연금액 + 월기준 총급여에서 중위소득 50% 이하(2019년,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자료 검토)를 파악함.

78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표 4-13〉 노인 특성별 빈곤여부(2020년 12월말 기준)

(단위: %)

구분(소득인정액)		비빈곤	빈곤
성별	남성	21.6	78.4
	여성	23.6	76.4
연령대	전기노인 (65~74)	33.0	67.0
	후기노인 (75~)	16.3	83.7
가구유형	단독가구	24.5	75.5
	부부가구	21.4	78.6
거주지역	농어촌 및 중소도시	23.7	76.3
	대도시	21.8	78.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	대기자	20.3	79.7
	참여자	23.2	76.8
구분(경상소득)		비빈곤	빈곤
성별	남성	15.8	84.2
	여성	17.0	83.0
연령대	전기노인 (65~74)	22.8	77.2
	후기노인 (75~)	12.6	87.4
가구유형	단독가구	23.1	76.9
	부부가구	9.9	90.1
거주지역	농어촌 및 중소도시	15.8	84.2
	대도시	18.2	81.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	대기자	12.5	87.5
	참여자	17.0	83.0

주1: 소득인정액을 통한 빈곤여부 측정은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월기준 총급여에서 교육급여 기준을 토대로 빈곤선 이하를 파악함.

주2: 경상소득을 통한 빈곤여부 측정은 균등화 경상소득 + 기초연금액 + 월기준 총급여에서 중위소득 50% 이하(2019년,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자료 검토)를 파악함.

〈표 4-14〉 노인 특성별 빈곤여부(2021년 6월말 기준)

(단위: %)

구분(소득인정액)		비빈곤	빈곤
성별	남성	25.9	74.1
	여성	25.8	74.2
연령대	전기노인 (65~74)	35.8	64.2
	후기노인 (75~)	18.4	81.6
가구유형	단독가구	25.0	75.0
	부부가구	26.7	73.3
거주지역	농어촌 및 중소도시	26.5	73.5
	대도시	24.7	75.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	대기자	30.3	69.7
	참여자	25.1	74.9

주1: 소득인정액을 통한 빈곤여부 측정은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월기준 총급여에서 교육급여 기준을 토대로 빈곤선 이하를 파악함.

주2: 2021년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없어 소득인정액을 통한 빈곤여부만 파악함.

주3: 6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 중임. 이에 급여가 총액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가구의 빈곤 완화 효과 분석

1) 소득인정액 기준 분석 결과

- 소득인정액 기준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의 빈곤율은 각각 93.2%(2019년 12월 기준), 93.5%(2020년 12월 기준), 그리고 90.8%(2021년 6월 기준)로 나타났다.
-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의 빈곤율은 기초연금액을 추가하여 분석할 경우 각각 87.1%, 87.9%, 그리고 83.5%로 감소하였다.
-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의 빈곤율은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를 12로 나눈 월총급여를 추가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각각 87.5%, 87.8%, 그리고 85.8%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통한 빈곤 감소율과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를 통한 빈곤 감소율이 유사하게 나타남을 의미함.
-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의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월기준 총급여를 모두 더한 소득을 통한 빈곤율은 각각 77.1%, 76.8%, 그리고 74.9%로 나타났다.
- 이러한 빈곤 감소는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의 빈곤율이 대기자 대비 더 낮은 빈곤율(2019년과 2020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1년 6월 기준 시점에서는 대기자의 빈곤율이 69.7%로 참여자의 74.9%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4-15〉 조사대상자의 빈곤 완화 효과(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단위: %)

구분 (소득인정액)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2021년 6월 기준
조사 대상자	참여자	빈곤	93.2	93.5	90.8
		비빈곤	6.8	6.5	9.2
	대기자	빈곤	88.7	88.9	82.4
		비빈곤	11.3	11.1	17.6
	전체	빈곤	92.9	93.2	89.6
		비빈곤	7.1	6.8	10.4
구분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2021년 6월 기준
조사 대상자	참여자	빈곤	87.1	87.9	83.5
		비빈곤	12.9	12.1	16.5
	대기자	빈곤	78.5	79.7	69.7
		비빈곤	21.5	20.3	30.3
	전체	빈곤	86.4	87.2	81.5
		비빈곤	13.6	12.8	18.5
구분 (소득인정액 + 월기준 총급여)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2021년 6월 기준
조사 대상자	참여자	빈곤	87.5	87.8	85.8
		비빈곤	12.5	12.2	14.2
	대기자	빈곤	88.7	88.9	82.4
		비빈곤	11.3	11.1	17.6
	전체	빈곤	87.6	87.9	85.3
		비빈곤	12.4	12.1	14.7
구분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월기준 총급여)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2021년 6월 기준
조사 대상자	참여자	빈곤	77.1	76.8	74.9
		비빈곤	22.9	23.2	25.1
	대기자	빈곤	78.5	79.7	69.7
		비빈곤	21.5	20.3	30.3
	전체	빈곤	77.2	77.0	74.2
		비빈곤	22.8	23.0	25.8

주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와 기초연금액이 제외되어 계산됨.

주2: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의 경우 각 자료의 시점별로 나누어 월별 기준으로 측정함.

주3: 본 자료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산정기준에 근거하였음. 이에 따라 가구의 전체 소득 및 자산의 액수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특히 빈곤 기준선의 경우 기초생활 급여기준에 근거함. 또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로 파악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기준을 1인가구, 2인가구로 구분하여 빈곤여부를 파악함.

주4: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자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 액수를 0으로 측정함.

2) 경상소득 기준 분석 결과

- 경상소득을 이용한 빈곤율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두 개년도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 경상소득을 통한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의 빈곤율은 각각 95.7%(2019년)과 96.3%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경상소득과 기초연금액의 합산 소득을 통한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의 빈곤율은 각각 90.7%와 93.2%로 나타났음.
- 경상소득에 노인일자리사업 월기준 총급여를 더한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의 빈곤율은 위에서 기초연금을 더한 경우와 유사하게 각각 90.1%와 92.9% 수준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경상소득에 기초연금 그리고 월기준 총급여를 더한 경우 빈곤율은 각각 72.2%와 83.0%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는 경상소득을 통해 분석하였을 경우 대기자(각각 87.5%와 87.5%) 대비 빈곤율이 더욱 낮게 나타나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

〈표 4-16〉 조사대상자의 빈곤완화 효과(균등화 경상소득을 중심으로)

(단위: %)

구분 (균등화 경상소득)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조사 대상자	참여자	빈곤	95.7	96.3
		비빈곤	4.3	3.7
	대기자	빈곤	91.7	91.5
		비빈곤	8.3	8.5
	전체	빈곤	95.4	95.9
		비빈곤	4.6	4.1
구분 (균등화 경상소득 + 기초연금액)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조사 대상자	참여자	빈곤	90.7	93.2
		비빈곤	9.3	6.8
	대기자	빈곤	87.5	87.5
		비빈곤	12.5	12.5
	전체	빈곤	90.5	92.7
		비빈곤	9.5	7.3
구분 (균등화 경상소득 + 월기준 총급여)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조사 대상자	참여자	빈곤	90.1	92.9
		비빈곤	9.9	7.1
	대기자	빈곤	91.7	91.5
		비빈곤	8.3	8.5
	전체	빈곤	90.2	92.8
		비빈곤	9.8	7.2
구분 (균등화 경상소득 + 기초연금액 + 월기준 총급여)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조사 대상자	참여자	빈곤	72.2	83.0
		비빈곤	27.8	17.0
	대기자	빈곤	87.5	87.5
		비빈곤	12.5	12.5
	전체	빈곤	73.3	83.4
		비빈곤	26.7	16.6

주1: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균등화 경상소득을 파악할 수 있고, 중위 소득 50% 이하 기준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의 기준을 토대로 빈곤여부를 측정함. 현재 2020년까지 살펴볼 수 있으므로 2021년 분석은 제외함.

주2: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경상소득 변수는 가구원수에 따른 균등화를 적용하였고, 본 연구의 데이터는 소득 산정기준이 단독, 부부가구이므로 가구원수를 1 또는 2로 균등화하여 분석함.

주3: 기초연금 행정데이터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도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하여 경상소득을 측정함.

주4: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의 경우 각 자료의 시점별로 나누어 월별 기준으로 측정함.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자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 액수를 0으로 측정함.

3) 빈곤율 감소 효과 분석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대비 일자리 사업 총급여를 추가한 경우의 빈곤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9년에는 10.0%p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11.1%p, 2021년에는 8.6%p로 각각 나타났음.
- 빈곤 완화 효과의 추가적인 분석으로 빈곤율 변화율을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A)으로 나눈 값은 각각 11.48%, 12.63%, 그리고 10.30%로 나타났음.
- 경상소득을 통한 분석에서 빈곤율 완화는 2019년에는 18.5%p, 2020년에는 10.2%p로 나타났음. 추가적으로 이 빈곤변화율은 경상소득+기초연금액(A)으로 나눈 값은 각각 20.40%(2019년)과 10.94%(2020년)로 나타났음.
- 비교 차원에서 2017년 경상소득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사업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한 강은나 외(2017)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의 빈곤감소 효과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강은나 외(2017) 연구에서는 빈곤율 감소가 4.09%p 그리고 4.89로 나타났음.

〈표 4-17〉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의 빈곤완화 효과 분석

(단위: %)

구분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2021년 6월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93.2	93.5	90.8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A)	87.1	87.9	83.5
	소득인정액 + 일자리사업 총급여(월)	87.5	87.8	85.8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일자리사업 총급여(월) (B)	77.1	76.8	74.9
	A - B	10.0%p	11.1%p	8.6%p
	(A-B)/A	11.48	12.63	10.30
경상소득 기준	경상소득	95.7	96.3	-
	경상소득 + 기초연금액 (A)	90.7	93.2	-
	경상소득 + 일자리사업 총급여(월)	90.1	92.9	-
	경상소득 + 기초연금액 + 일자리사업 총급여(월) (B)	72.2	83.0	-
	A - B	18.5%p	10.2%p	-
	(A-B)/A	20.40	10.94	-

-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의 빈곤감소효과를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총급여가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인상하였을 경우 빈곤율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음.
- 2019년 12월 기준 5만원의 총급여 인상은 참여자의 빈곤율을 72.2%에서 65.0%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참여자와 대기자 전체 노인의 경우 빈곤율은 73.3%에서 66.5%로 낮아졌음. 만약 10만원의 총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참여자의 빈곤율은 57.4%로 감소하였고, 참여자와 대기자 전체 노인의 빈곤율은 59.3%로 감소하였음.
- 2020년 12월 기준 분석에서는 5만원 총급여 인상은 참여자의 빈곤율을 83.0%에서 78.8%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10만원 총급여 인상은 추가적으로 빈곤율을 73.1%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8〉 노인일자리사업 월기준 총급여 5만원 또는 10만원 인상시 빈곤 완화 효과

(단위: %)

구분 (균등화 경상소득 + 기초연금액 + 월기준 총급여)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조사 대상자	참여자	빈곤	72.2	83.0
		비빈곤	27.8	17.0
	대기자	빈곤	87.5	87.5
		비빈곤	12.5	12.5
	전체	빈곤	73.3	83.4
		비빈곤	26.7	16.6
구분 (균등화 경상소득 + 기초연금액 + 월기준 총급여 + 월기준 총급여 5만원 인상시)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조사 대상자	참여자	빈곤	65.0	78.8
		비빈곤	35.0	21.2
	대기자	빈곤	85.9	86.4
		비빈곤	14.1	13.6
	전체	빈곤	66.5	79.4
		비빈곤	33.5	20.6
구분 (균등화 경상소득 + 기초연금액 + 월기준 총급여 + 월기준 총급여 10만원 인상시)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12월 기준
조사 대상자	참여자	빈곤	57.4	73.1
		비빈곤	42.6	26.9
	대기자	빈곤	83.7	85.0
		비빈곤	16.3	15.0
	전체	빈곤	59.3	74.0
		비빈곤	40.7	26.0

4) 패널 분석

- 추가적으로 2019년과 2020년 두 개년도에서 대기 및 참여의 지위변화에 따른 빈곤율 감소를 조사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2개 년도상 대기자-대기자, 대기자-참여자, 참여자-참여자 이렇게 3개 그룹을 통한 비교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소득기준은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음.
- 먼저, 대기자-대기자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빈곤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대기자-참여자 그룹의 경우 빈곤율의 감소가 나타났음. 다만, 2년 연속 참여자의 빈곤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19〉 2019년과 2020년 빈곤율

(단위: %)

구분	집단		2019년 빈곤율(A)	2020년 빈곤율(B)	감소효과	
	2019년	2020년			A-B	(A-B)/A
경상소득 기준	대기자	대기자	87.9	91.9	-4.0%p	-4.6%
	대기자	참여자	89.4	86.5	2.9%p	3.2%
	참여자	참여자	71.0	82.6	-11.6%p	-16.3%

주1: 2019년과 2020년 모두 대기자인 대상은 5,786명임.

주2: 2019년은 대기자, 2020년의 경우 참여자인 대상은 15,443명임.

주3: 2019년과 2020년 모두 참여자인 대상은 514,581명임.

주4: 2019년, 2020년 머지한 데이터의 크기는 총 558,864명임.

주5: 경상소득을 통한 빈곤여부 측정은 균등화 경상소득 + 기초연금액 + 월기준 총급여에서 중위소득 50% 이하(2019년,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자료 검토)를 파악함.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유형별 대기 및 참여 지위변동에 따른 빈곤율 감소 결과도 전체 노인들을 통한 분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기자-대기자의 경우 빈곤율이 증가하였고, 대기자-참여자의 경우 빈곤율 감소, 그러나 참여자-참여자의 경우 빈곤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2019년과 2020년 빈곤율(공익활동형)

(단위: %)

구분	집단		2019년 빈곤율(A)	2020년 빈곤율(B)	감소효과	
	2019년	2020년			A-B	(A-B)/A
경상소득 기준	대기자	대기자	88.9	92.7	-3.8%p	-4.3%
	대기자	참여자	90.6	88.5	2.1%p	2.3%
	참여자	참여자	74.5	86.2	-11.7%p	-15.7%

주1: 2019년과 2020년 모두 공익활동형 대기자인 대상은 5,066명임.

주2: 2019년은 공익활동형 대기자, 2020년의 경우 공익활동형 참여자인 대상은 13,158명임.

주3: 2019년과 2020년 모두 공익활동형 참여자인 대상은 442,905명임.

〈표 4-21〉 2019년과 2020년 빈곤율(시장형)

(단위: %)

구분	집단		2019년 빈곤율(A)	2020년 빈곤율(B)	감소효과	
	2019년	2020년			A-B	(A-B)/A
경상소득 기준	대기자	대기자	81.5	90.2	-8.7%p	-10.7%
	대기자	참여자	85.3	81.3	4.0%p	4.7%
	참여자	참여자	50.7	67.8	-17.1%p	-33.7%

주1: 2019년과 2020년 모두 시장형 대기자인 대상은 92명임.

주2: 2019년은 시장형 대기자, 2020년의 경우 시장형 참여자인 대상은 225명임.

주3: 2019년과 2020년 모두 시장형 참여자인 대상은 26,279명임.

88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 빈곤갭 비율을 통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2019년과 2020년에 모두 대기자인 노인의 빈곤갭 비율은 각각 39.7%, 46.4%인 것으로 나타났고, 약 17%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반면, 2019년에 대기자였으나 2020년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참여한 노인의 빈곤갭 비율은 각각 40.8%, 31.9%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약 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9년에 대기자였으나, 2020년에 사업을 참여한 노인의 경우 빈곤율 완화와 함께 빈곤갭 비율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표 4-22〉 2019년과 2020년 빈곤갭 비율

(단위: %)

구분	집단		2019년 빈곤갭	2020년 빈곤갭	2019년 빈곤갭 비율(A)	2020년 빈곤갭 비율(B)	감소효과	
	2019년	2020년					A-B	(A-B)/A
경상소득 기준	대기자	대기자	34.9	42.6	39.7	46.4	-6.7%p	-16.9%
	대기자	참여자	36.5	27.6	40.8	31.9	8.9%p	21.8%
	참여자	참여자	16.8	21.2	23.7	25.7	-2.0%p	-8.4%

주1: 2019년과 2020년 모두 대기자인 대상은 5,786명임.

주2: 2019년은 대기자, 2020년의 경우 참여자인 대상은 15,443명임.

주3: 2019년과 2020년 모두 참여자인 대상은 514,581명임.

주4: 2019년, 2020년 머지한 데이터의 크기는 총 558,864명임.

주5: 경상소득을 통한 빈곤여부 측정은 균등화 경상소득 + 기초연금액 + 월기준 총급여에서 중위소득 50% 이하(2019년,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자료 검토)를 파악함.

○ 공익활동형과 시장형을 참여한 노인의 빈곤갭 비율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공익활동형을 중심으로 볼 때 2019년에 대기자였으나 2020년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참여한 노인의 빈곤갭 비율은 각각 40.7%, 31.8%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약 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9년에 대기자였으나, 2020년에 공익활동형을 참여한 노인의 경우 빈곤율 완화와 함께 빈곤갭 비율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표 4-23〉 2019년과 2020년 빈곤갭 비율(공익활동형)

(단위: %)

구분	집단		2019년 빈곤갭	2020년 빈곤갭	2019년 빈곤갭 비율(A)	2020년 빈곤갭 비율(B)	감소효과	
	2019년	2020년					A-B	(A-B)/A
경상소득 기준	대기자	대기자	35.3	43.1	39.7	46.5	-6.8%p	-17.1%
	대기자	참여자	36.9	28.1	40.7	31.8	8.9%p	21.9%
	참여자	참여자	17.2	21.8	23.1	25.3	-2.2%p	-9.5%

주1: 2019년과 2020년 모두 공익활동형 대기자인 대상은 5,066명임.

주2: 2019년은 공익활동형 대기자, 2020년의 경우 공익활동형 참여자인 대상은 13,158명임.

주3: 2019년과 2020년 모두 공익활동형 참여자인 대상은 442,905명임.

○ 시장형을 중심으로 볼 때 2019년에 대기자였으나 2020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참여한 노인의 빈곤갭 비율은 각각 43.6%, 35.4%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약 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9년에 대기자였으나, 2020년에 시장형을 참여한 노인의 경우 빈곤율 완화와 함께 빈곤갭 비율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4〉 2019년과 2020년 빈곤갭 비율(시장형)

(단위: %)

구분	집단		2019년 빈곤갭	2020년 빈곤갭	2019년 빈곤갭 비율(A)	2020년 빈곤갭 비율(B)	감소효과	
	2019년	2020년					A-B	(A-B)/A
경상소득 기준	대기자	대기자	34.7	42.5	42.6	47.1	-4.5%p	-10.6%
	대기자	참여자	37.2	28.8	43.6	35.4	8.2%p	18.8%
	참여자	참여자	11.4	17.2	22.5	25.4	-2.9%p	-12.9%

주1: 2019년과 2020년 모두 시장형 대기자인 대상은 92명임.

주2: 2019년은 시장형 대기자, 2020년의 경우 시장형 참여자인 대상은 225명임.

주3: 2019년과 2020년 모두 시장형 참여자인 대상은 26,279명임.

5) 로지스틱 회귀 분석

- 다른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월기준 총급여가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음. 각 분석에서 모형 1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월기준 총급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모형 2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사업유형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음.
- 2019년, 2020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 모델 1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월기준 총급여가 높을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모델 2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월기준 총급여가 높을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더불어 공익형 참여 노인 대비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5〉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가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β	S.E.	Exp(β)	β	S.E.	Exp(β)
(상수항)	44.926***	1.880		81.298***	2.119	
성별	-.405***	.010	.667	-.732***	.011	.481
연령대	.839***	.008	2.315	.800***	.008	2.225
가구유형	1.951***	.009	7.034	2.415***	.011	11.188
거주지역	-.145***	.007	.865	-.103***	.008	.900
교육수준	-.115***	.005	.891	-.066***	.005	.936
순자산(log)	-1.970***	.087	.139	-3.105***	.097	.045
노인일자리사업 월기준 총급여(log)	-.196***	.002	.822	-1.157***	.010	.314
사업유형 (ref.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3.187***	.030	.041
	시장형			-1.173***	.015	.310
	재능나눔활동			-.071*	.034	.931
Chi-Square	81247.397***			129887.838***		
-2Log Likelihood	471390.596			396288.523		
Nagelkerke R ²	.230			.367		

*p<0.05, ***p<0.001

주1: 2019년 기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함.

주2: 모형1은 전체 대상, 모형2는 참가자를 중심으로 분석함.

주3: 교육수준의 경우 결측치가 존재하여 제외시킴.

주4: 성별(여성=0, 남성=1), 연령대(65세~74세=0, 75세 이상=1), 가구유형(단독가구=0, 부부가구=1), 거주지역(농어촌 및 중소도시=0, 대도시=1), 교육수준(초졸 이하=1, 중졸=2, 고졸=3, 전문대 및 대졸 이상=4)

주5: 빈곤여부의 경우 균등화 경상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빈곤여부를 균등화 경상소득 + 기초연금액 + 월기준 총급여에서 중위 소득 50% 이하 기준으로 측정함.

주6: 모형1의 n=468,245명이고, 모형2의 n=438,257명임.

주7: 대기자인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가 0임.

92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표 4-26〉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가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β	S.E.	Exp(β)	β	S.E.	Exp(β)
(상수항)	17.363***	1.943		30.573***	2.146	
성별	-.560***	.010	.571	-.778***	.011	.469
연령대	.966***	.008	2.628	.780***	.009	2.182
가구유형	1.450***	.010	4.264	1.721***	.011	5.593
거주지역	-.135***	.008	.874	-.117***	.009	.880
교육수준	-.109***	.005	.897	-.043***	.005	.958
순자산(log)	-.720***	.090	.487	-.974***	.099	.378
노인일자리사업 월기준 총급여(log)	-.083***	.002	.920	-.695***	.009	.499
사업유형 (ref.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2.019***	.016	.133
	시장형			-1.048***	.015	.351
	재능나눔활동			-.032	.060	.969
Chi-Square	40104.835***			72211.346***		
-2Log Likelihood	426629.093			367943.591		
Nagelkerke R ²	.126			.234		

***p<0.001

주1: 2020년 기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함.

주2: 모형1은 전체 대상, 모형2는 참가자를 중심으로 분석함.

주3: 교육수준의 경우 결측치가 존재하여 제외시킴.

주4: 성별(여성=0, 남성=1), 연령대(65세~74세=0, 75세 이상=1), 가구유형(단독가구=0, 부부가구=1), 거주지역(농어촌 및 중소도시=0, 대도시=1), 교육수준(초졸 이하=1, 중졸=2, 고졸=3, 전문대 및 대졸 이상=4)

주5: 빈곤여부의 경우 균등화 경상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빈곤여부를 균등화 경상소득 + 기초연금액 + 월기준 총급여에서 중위 소득 50% 이하 기준으로 측정함.

주6: 모형1의 n=506,192명이고, 모형2의 n=471,469명임.

주7: 대기자인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가 0임.

6) 빈곤 완화 효과 분석

○ Shapley 방법에 의한 소득원천별 FGT(Foster, Greer, & Thorbecke) 지수의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본 연구의 경상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적이전소득 약 32.9%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근로소득 17.8%, 기초연금액 24.9%,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액은 20.7%로 확인되었음.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액을 중심으로 해석해보면 빈곤한 사람이 100명이 있을 경우 급여액은 약 6명의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함. 그리고 빈곤갭이 100원일 때 약 17원 정도의 갭을 줄여주고, 빈곤의 흑독함이 100이라고 한다면 약 20만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끝으로 분석결과에서 소득원천별 차지하는 비중보다 상대적 기여도가 클 경우 해당 소득원천은 빈곤 완화에 더욱 효과적인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음(홍경준, 2011).

〈표 4-27〉 소득원천별 FGT지수의 분해(전체, n=664,229)

구분	소득대비	a=0 빈곤율		a=1 빈곤갭		a=2 빈곤의 흑독함	
		(a)	(b)	(a)	(b)	(a)	(b)
근로소득	17.8	-7.7	28.7	-13.2	16.3	-14.1	15.2
사업소득	0.3	-0.1	0.4	-0.2	0.2	-0.2	0.2
재산소득	3.4	-1.2	4.3	-2.7	3.4	-3.2	3.4
공적이전소득	32.9	-6.9	25.9	-27.2	33.7	-31.1	33.4
기초연금액	24.9	-5.2	19.5	-20.7	25.6	-24.9	26.8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액	20.7	-5.7	21.2	-16.8	20.8	-19.6	21.0
총소득	100.0	-26.7	100.0	-80.9	100.0	-93.0	100.0

주1: (a)는 절대적 기여도, (b)는 상대적 기여도를 의미함.

주2: 소득원천별 월기준임.

주3: 2019년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함(2020년 데이터는 코로나19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으며, 2021년 자료는 6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 사업의 전반적인 총급여액을 살펴볼 수 없음.).

94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 공익활동형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빈곤한 사람이 100명이 있을 경우 급여액은 약 5명의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함. 그리고 빈곤갭이 100원일 때 약 18원 정도의 갭을 줄여주고, 빈곤의 흑독함이 100이라고 한다면 약 21만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8〉 소득원천별 FGT지수의 분해(공익활동형을 중심으로, n=535,242)

구분	소득대비	a=0 빈곤율		a=1 빈곤갭		a=2 빈곤의 흑독함	
		(a)	(b)	(a)	(b)	(a)	(b)
근로소득	16.5	-6.5	26.2	-12.7	15.5	-13.7	14.6
사업소득	0.2	-0.1	0.4	-0.2	0.2	-0.2	0.2
재산소득	3.2	-1.2	4.7	-2.5	3.1	-3.0	3.1
공적이전소득	32.9	-6.7	26.9	-27.3	33.3	-30.7	32.7
기초연금액	25.5	-5.3	21.4	-21.2	25.9	-25.1	26.8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액	21.7	-5.0	20.3	-18.1	22.0	-21.2	22.6
총소득	100.0	-24.7	100.0	-82.1	100.0	-94.0	100.0

주1: (a)는 절대적 기여도, (b)는 상대적 기여도를 의미함.

주2: 소득원천별 월기준임.

주3: 2019년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함.

제4절 소결

1. 요약

- 본 장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급여가 노인 가구의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통계자료와 사회보장시스템 행복e음 기초연금 수급자 관련 행정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음.
- 조사 시점은 2019년 12월, 2020년 12월, 그리고 2021년 6월, 이렇게 3개의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이용하였고 빈곤선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수준과 경상소득 중위소득의 50%를 이용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업 참여자와 대기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주요 분석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빈곤율, 빈곤갭, 그리고 빈곤갭 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을 통제한 뒤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가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음.

○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기초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2019년 약 61만 명에서 2021년 6월 기준 약 68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대기자의 경우에도 2019년 약 48천명 수준에서 2021년 6월 기준 113천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가구소득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소득과 비교하여 2020년 약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6월 기준 시점에서는 가구소득이 많이 증가하였음(예, 경상소득의 경우 2019년 594,188원, 2020년 577,205원, 2021년 6월 709,400원).
- 월평균 소득인정액의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소득인정액은 2019년 432,932원에서 2020년 445,956원 그리고 2021년 6월 510,046원으로 증가하였음.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평균 총급여는 사회서비스형이 가장 많은 총급여를 받고 있고, 뒤를 이어 시장형, 공익활동형, 그리고 재능나눔 활동형으로 나타 났음.
- 조사대상자의 빈곤여부에 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하면 참여자의 경우 2019년 93.2%, 2020년 93.5%, 그리고 2021년 6월 기준 90.8%로 나타났음. 둘째,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참여자보다 대기자의 소득인정액 수준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그리고 일자리사업 참여자 총급여를 합한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셋째, 경상소득을 통한 분석결과에서도 경상소득만 조사한 경우 대기자의 소득이 높게 나타났으나, 기초연금과 월기준 총급여를 합한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한 빈곤 완화 효과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지급한 경우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총급여를 각각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총급여의 빈곤완화 효과가 유사하게 나왔음.
-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 그리고 사업 총급여를 모두 더한 경우 빈곤율은 93.2%에서 77.1%(2019년 기준), 93.5%에서 76.8%(2020년 기준), 90.8%에서 74.9%로 각각 감소하였음.
-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가 영향을 준 빈곤율 감소 효과는 조사시점 순으로 각각 10.0%p, 11.1%p, 8.6%p로 나타났음.
- 경상소득을 통한 분석에서도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의 빈곤 감소효과는 유사하게 나타났음.
- 추가적으로 경상소득에 기초연금액과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를 더한 경우 빈곤율은 95.7%에서 72.2%(2019년 기준), 96.3%에서 83.0%(2020년 기준)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상소득을 통한 분석에서도 경상소득+기초연금액을 기초로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18.5%p와 10.2%p로 나타났음.
- 추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가 각각 5만원과 10만원 인상했을 경우에 빈곤 완화효과를 경상소득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5만원 인상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빈곤율은 2019년 65.0%, 2020년 78.8%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0만원을 인상했을 경우에는 2019년 57.4% 그리고 2020년 73.1%로 빈곤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9년과 2020년을 패널분석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지위 변동에 따른 빈곤율 변화를 분석하였음. 우선 대기자-대기자의 경우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기자-참여자의 경우 빈곤율이 감소하였으나, 참여자-참여자의 경우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익활동형과 시장형을 통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유형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빈곤갭을 통한 분석에서도 대기자-참여자의 빈곤갭 개선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기자-대기자, 그리고 참여자-참여자의 빈곤갭 개선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음.
-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과 2020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는 빈곤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Shapley 방법에 의한 소득원천별 FGT(Foster, Greer, & Thorbecke) 지수의 분석결과, 본 연구의 경상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적이전소득 약 32.9%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근로소득 17.8%, 기초연금액 24.9%,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액은 20.7%로 확인되었음.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액을 중심으로 해석해보면 빈곤한 사람이 100명이 있을 경우 급여액은 약 6명의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함. 그리고 빈곤갭이 100원일 때 약 17원 정도의 갭을 줄여주고, 빈곤의 흑독함이 100이라고 한다면 약 20만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2. 함의

-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및 대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인정액과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은 90%가 넘을 정도로 높게 나타났음.
- 이들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는 빈곤율 감소에 있어서 유사한 감소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고,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형의 월 최대 급여가 27만원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됨.
-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의 빈곤 완화 효과는 참여자와 대기자의 비교를 통해서 보다 선명하게 나타났음. 대기자와 비교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빈곤율이 더 낮아진다는 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 완화 효과가 지지된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2021년 6월 기준 시점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기자의 빈곤율이 참여자의 빈곤율보다 낮게 나타났음. 이는 대기자의 소득인정액이 대상자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노인 대기자가 증가하였다는 점으로 설명됨.
- 본 연구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빈곤 완화 효과는 기존 선행연구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대규모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분석할 수 있는 행정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였기 때문임. 선행연구들(강은나 외 2017; 손병돈 외, 2019)의 노인일자리사업 빈곤 완화 효과가 다소 저평가되었다고 사료됨.
- 2019년과 2020년 패널분석을 통한 대기 및 참여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두 시점에서 모두 대기자인 경우에 2020년 빈곤율이 높아졌다는 점과 대기자(2019년)에서 참여자(2020년)로 진입하면서 빈곤율이 감소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다만, 2개년 기간 동안 모두 참여한 참여자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하였다는 점은 노인일자리사업 빈곤

완화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가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하였음. 주요 분석결과는 성별, 연령대, 가구유형, 거주지역, 교육수준, 순자산을 통제 한 뒤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총급여는 빈곤여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추가적으로 다른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에 비교하여 볼 때 공익활동형 참여 노인들이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공익활동형의 급여 인상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각 참여 유형별 보수체계에 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균등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2019년과 2020년 각각의 노인일자리사업 총급여가 5만원과 10만원 인상했을 경우의 빈곤율 감소를 분석하였음. 2019년 기준으로 5만원 인상했다고 가정하면 빈곤율은 65.0%로, 10만원 인상시 57.4%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2020년 기준으로는 각각 78.8%와 73.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인일자리사업 급여의 인상을 통해 노인의 빈곤 완화 효과를 개선하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제 5 장

노인일자리사업과 소득불평등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5

노인일자리사업과 소득불평등 <<

제1절 선행연구

-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정부는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의 증대를 통해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있음. 이와 함께 노동 가능한 노인의 경우 공공근로 등의 노인일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소득을 보충하여 빈곤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시도하고 있음.
-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가에 따른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없음.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의 공적이전을 통해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김진욱(2004)은 소득분위배율, 지니계수를 통해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과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하였음. 유혜립, 민인식(2019)은 연구자들이 세 무자료가 아닌 이차 자료를 활용할 경우 최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소득불평등 지수가 과소보고 및 하향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수정된 로렌츠 곡선을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하였음.
-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 조사는 경상소득(시장소득+이전소득)에서 직접세, 사회보험기여를 뺀 가처분 소득을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본 연구는 직접세, 사회보험기여금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지 못하여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에 기반하여 소득분위배율, 지니계수 분석을 통해 참가자들의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이때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104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분석한 결과와 노인일자리 참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뺀 경우 소득불평등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통해 그 효과를 제시하였음. 그리고 연령, 성별, 교육, 지역의 특성별로 분위배분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분석하였음. 마지막으로 분해분석을 통해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소득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시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득불평등 개선에서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소득 요인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제2절 분석 결과

1. 주요 변수

- 본 장은 노인일자리 참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임. 이에 소득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위배율과 지니계수 분해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경상소득으로 정의하였음. 또한 일자리 참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상소득에서 일자리 참여 소득을 뺀 값과 경상소득을 비교하였음.

〈표 5-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소득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p> <p>* 공적이전소득에 기초연금 포함 * 기초 연금의 경우 신청 후 30만원 이상 받은 사례가 있어 월 연금최대액인 30만원으로 수정함 * 공적이전소득에 노인일자리참여 급여를 추가하였음. 이때 월별 소득으로 변환하기 위해 참여 일수 변수를 활용하였음. 참여일수 변수에서 30으로 나눈 후 반올림하여 참여한 기간을 월별 변수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총 급여에서 나누어 월별 소득을 산출함</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소득-일자리참여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노인일자리 참여소득</p>
연령	65~79 = 1 / 80이상 = 2
성별	남성 = 1 / 여성 = 2
교육	고졸이하 = 1 / 대학이상 = 2
지역	<p>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대전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 1</p> <p>강원도/경기도/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충청북도 = 2</p>

- 이 외에도 연령, 성별, 교육, 지역에 따라 소득분위배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함께 살펴보았음.

2. 소득분위 분석결과

- 통계청에서 공개하는 10개의 분위별 경상소득 기준과 노인 일자리 참여자/대기자의 경상소득과 경상소득에서 일자리 참여 소득을 뺀 소득을 기준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 전체에 비해 노인일자리 참여자/대기자의 경상소득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1분위의 소득을 살펴보면, 한국 전체의 소득은 19년도 104만원, 20년도 107만원, 21년도 112만원 정도이며, 일자리 참여자/대기자의 경상소득은 64만원, 20년도 59만원, 21년도 65만원으로 나타났음. 그 차이를 살펴보면, 19년도 49.7만원 20년도 48만원, 21년도 46.9만원으로 나타났음. 일자리 소득을 뺀 소득을 기준으로 그 차이를 살펴보면, 19년도 62.8만원, 20년도 69.9만원, 21년도 62.6만원으로 그 차이가 더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둘째, 한국 전체와 노인일자리 참여자/대기자의 분위별 소득의 격차는 상위 소득계층으로 갈수록 차이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먼저 한국 전체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분위별 소득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면, 1분위에서 평균 45만원 2분위, 143만원, 3분위 210만원에서 10분위에서는 994만원의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음. 분위별 평균의 차이를 통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대기자들은 한국 전체에 비해 소득이 낮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셋째,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참여자는 매월 26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 소득은 각 분위별 소득 평균을 상회하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상소득에서 일자리참여소득이 빠진 소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1분위)이 19년도 414,580원, 20년도 375,000원 21년도 496,699원이었음. 이에 일자리 소득이 더해졌을 때 1분위의 소득

평균은 19년도 644,864원, 20년도 591,455원, 21년도 654,111원으로 19년도 약 23만원 증가하였고, 20년도 22만원, 21년도 16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1분위의 경우 평균 216,931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 상위 10분위를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소득이 없었으면, 19년도 124만원, 20년도 126만원, 21년도 143만원이었으며, 이에 일자리 소득이 더해져서 19년도 156만원, 20년도 159만원, 21년도 167만원으로 평균 297,659원이 증가하였음.

-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평균적으로 26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소득의 증가는 소득 하위 분위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위에서 소득 보충이 더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인일자리 참여자/대기자들의 소득 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전체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이때 참여자/대기자 전체, 참여자, 대기자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 사회 전체를 기준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대기자의 경상소득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그들의 대부분이 가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대기자 97%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중 60%의 노인이 1분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분위는 37%정도가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를 참여자와 대기자를 구분한 자료를 살펴보면, 집단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참여자의 경우 일자리 참여 소득을 빼면, 1분위에 포함 되는 비중이 82% 정도가 됨. 대기자들의 1분위에 속한 비율이 74%이며, 상대적으로 3분위 이상에 포함된 비중이 높음.

〈표 5-2〉 10분위 기준 분위별 소득평균

	한국 전체*		경상소득 기준**				경상소득-일자리참여소득 기준***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1분위	1,042,850	1,074,990	1,123,324	644,864	591,455	654,111	414,580	375,000	496,699	
2분위	2,161,244	2,187,214	2,165,634	738,970	701,559	773,333	499,648	484,500	578,920	
3분위	2,892,072	2,917,715	2,936,172	803,000	773,000	852,249	556,823	525,500	661,249	
4분위	3,601,827	3,589,144	3,630,923	868,750	837,167	940,315	622,193	593,000	758,916	
5분위	4,201,948	4,251,504	4,292,081	940,970	910,483	1,026,282	693,833	671,480	837,123	
6분위	4,887,774	4,951,435	4,851,323	1,011,785	987,357	1,104,264	762,230	740,250	910,493	
7분위	5,610,832	5,679,434	5,572,218	1,089,500	1,066,429	1,190,606	836,646	812,291	994,905	
8분위	6,506,241	6,661,412	6,508,908	1,182,775	1,166,937	1,294,456	924,000	906,240	1,092,029	
9분위	7,764,403	7,884,535	7,950,876	1,307,063	1,301,439	1,429,475	1,035,823	1,024,590	1,218,596	
10분위	11,313,843	11,373,773	11,972,227	1,566,373	1,593,550	1,677,852	1,242,726	1,262,980	1,439,091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한국 전체의 소득 10분위 기준

**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대기자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도출된 10분위

***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대기자의 일자리참여 소득을 뺀 경상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도출된 10분위

〈표 5-3〉 한국전체와 경상소득 기준 분위별 평균차이

	한국 전체*			경상소득 기준**			한국전체-경상소득***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1분위	1,042,850	1,074,990	1,123,324	644,864	591,455	654,111	397,986	483,535	469,213
2분위	2,161,244	2,187,214	2,165,634	738,970	701,559	773,333	1,422,274	1,485,655	1,392,301
3분위	2,892,072	2,917,715	2,936,172	803,000	773,000	852,249	2,089,072	2,144,715	2,088,923
4분위	3,601,827	3,589,144	3,630,923	868,750	837,167	940,315	2,733,077	2,751,977	2,690,608
5분위	4,201,948	4,251,504	4,292,081	940,970	910,483	1,026,282	3,260,978	3,341,021	3,265,799
6분위	4,887,774	4,951,435	4,851,323	1,011,785	987,357	1,104,264	3,875,989	3,964,078	3,747,059
7분위	5,610,832	5,679,434	5,572,218	1,089,500	1,066,429	1,190,606	4,521,332	4,613,005	4,381,612
8분위	6,506,241	6,661,412	6,508,908	1,182,775	1,166,937	1,294,456	5,323,466	5,494,475	5,214,452
9분위	7,764,403	7,884,535	7,950,876	1,307,063	1,301,439	1,429,475	6,457,340	6,583,096	6,521,401
10분위	11,313,843	11,373,773	11,972,227	1,566,373	1,593,550	1,677,852	9,747,470	9,780,223	10,294,375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한국 전체의 소득 10분위 기준

**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대기자의 일자리참여 소득을 뺀 경상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도출된 10분위

*** 한국전체 분위별 평균과 경상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도출된 분위별 평균의 차이

〈표 5-4〉 한국전체와 경상소득-일자리참여소득 기준 분위별 평균차이

	한국 전체*			경상소득-일자리참여소득 기준**					한국전체-경상소득-일자리참여소득***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1분위	1,042,850	1,074,990	1,123,324	397,986	483,535	469,213	628,270	699,990	626,625			
2분위	2,161,244	2,187,214	2,165,634	1,422,274	1,485,655	1,392,301	1,661,596	1,702,714	1,586,714			
3분위	2,892,072	2,917,715	2,936,172	2,089,072	2,144,715	2,083,923	2,335,249	2,392,215	2,274,923			
4분위	3,601,827	3,589,144	3,630,923	2,733,077	2,751,977	2,690,608	2,979,634	2,996,144	2,872,007			
5분위	4,201,948	4,251,504	4,292,081	3,260,978	3,341,021	3,265,799	3,508,115	3,580,024	3,454,958			
6분위	4,887,774	4,951,435	4,851,323	3,875,989	3,964,078	3,747,059	4,125,544	4,211,185	3,940,830			
7분위	5,610,832	5,679,434	5,572,218	4,521,332	4,613,005	4,381,612	4,774,186	4,867,143	4,577,313			
8분위	6,506,241	6,661,412	6,508,908	5,323,466	5,494,475	5,214,452	5,582,241	5,755,172	5,416,879			
9분위	7,764,403	7,884,535	7,950,876	6,457,340	6,583,096	6,521,401	6,728,580	6,859,945	6,732,280			
10분위	11,313,843	11,373,773	11,972,227	9,747,470	9,780,223	10,294,375	10,071,117	10,110,793	10,533,136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한국 전체의 소득 10분위 기준

**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대기자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도출된 10분위

*** 한국전체 분위별 평균과 경상소득-일자리참여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도출된 분위별 평균의 차이

- 둘째, 일자리 참여 소득이 더해지게 되면, 사업 참여자들은 1분위에서 2분위로의 이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참여자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2분위에 속하는 비율 38.7%로 일자리 참여소득을 뺀 때의 17.6%보다 21.1%p 증가하였음.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경우 일자리 참여 소득을 뺀 경우 1분위에 포함되는 비중은 19년도 96.02%, 20년도 85.1%, 21년 76.49%로 대기자의 1분위 비중 19년도 79.83%, 20년도 77.8%, 21년도 67.82%에 비해 매우 높았음. 하지만 참여자의 1분위 비중은 노인 일자리를 통해 대기자의 1분위 비중에 비해서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일자리 참여 소득을 통해 1분위에 속한 비중이 19년 56.65%, 20년 63.35%, 21년 54.82%로 개선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분위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 셋째, 2분위의 경우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는 자인데, 일자리 참여 소득이 더해진 경우 2분위에 포함된 비중이 참여자가 대기자에 비해서 소득이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일자리 참여자와 대기자와의 소득 격차의 발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일자리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소득의 격차의 발생은 당연한 것이지만, 1분위에 머물러 있는 대기자들의 소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됨.
- 한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경우 경상소득이 71만원이며, 일자리 참여 소득을 뺀 경우 45만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즉, 매월 평균 26만원 정도의 일자리 참여 소득을 받았음. 51%의 사람들이 매월 25만원 이하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소득을 받았으며, 48.7%가 25만원에서 50만원의 소득을 받았고, 0.3%의 사람은 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받았음. 이러한 일자리 참여소득은 참여자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112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표 5-5〉 소득분위별 비율 : 전체

	경상소득						경상소득-노인일자리참여소득					
	2019.12		2020.12		2021.06		2019.12		2020.12		2021.06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1분위	58.27	387,070	64.49	484,794	56.67	452,006	82.29	546,607	84.52	635,405	84.52	600,181
2분위	38.99	258,968	32.27	242,557	39.85	317,814	16.44	109,229	13.71	103,065	13.71	179,818
3분위	2.26	15,018	2.43	18,263	2.71	21,590	1.01	6,699	1.33	9,966	1.33	13,445
4분위	0.35	2,312	0.54	4,024	0.58	4,586	0.17	1,140	0.25	1,898	0.25	2,946
5분위	0.07	498	0.16	1,212	0.11	900	0.05	311	0.11	802	0.11	601
6분위	0.03	225	0.07	541	0.04	283	0.02	146	0.05	354	0.05	245
7분위	0.01	69	0.02	180	0.02	181	0.01	47	0.01	110	0.01	141
8분위	0.01	41	0.01	89	0.01	96	0	29	0	72	0.01	93
9분위	0	18	0.01	54	0.01	57	0	14	0	46	0.01	47
10분위	0	10	0	27	0	39	0	7	0	23	0	35
Total	100	664,229	100	751,741	100	797,552	100	664,229	100	751,741	100	797,552

〈표 5-6〉 소득분위별 비율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경상소득						경상소득-노인일자리참여소득						
	2019.12		2020.12		2021.06		2019.12		2020.12		2021.06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1분위	56.65	348,690	63.35	438,548	54.82	374,780	82.57	508,227	85.1	589,159	85.1	522,955	76.49
2분위	40.69	250,434	33.53	232,124	42.1	287,809	16.36	100,695	13.38	92,632	13.38	149,813	21.91
3분위	2.21	13,629	2.35	16,273	2.46	16,798	0.86	5,310	1.15	7,976	1.15	8,653	1.27
4분위	0.33	2,042	0.52	3,597	0.48	3,313	0.14	870	0.21	1,471	0.21	1,673	0.24
5분위	0.07	436	0.15	1,023	0.09	611	0.04	249	0.09	613	0.09	312	0.05
6분위	0.03	188	0.06	449	0.02	161	0.02	109	0.04	262	0.04	123	0.02
7분위	0.01	58	0.02	152	0.01	102	0.01	36	0.01	82	0.01	62	0.01
8분위	0.01	37	0.01	71	0.01	51	0	25	0.01	54	0.01	48	0.01
9분위	0	17	0.01	42	0.01	38	0	13	0	34	0	28	0
10분위	0	10	0	22	0	20	0	7	0	18	0	16	0
Total	100	615,541	100	692,301	100	683,683	100	615,541	100	692,301	100	683,683	100

114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표 5-7〉 소득분위별 비율 : 노인 일자리 사업 대기자

	2019.12		2020.12		2021.06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분위	38,380	78.83	46,246	77.8	77,226	67.82
2분위	8,534	17.53	10,433	17.55	30,005	26.35
3분위	1,389	2.85	1,990	3.35	4,792	4.21
4분위	270	0.55	427	0.72	1,273	1.12
5분위	62	0.13	189	0.32	289	0.25
6분위	37	0.08	92	0.15	122	0.11
7분위	11	0.02	28	0.05	79	0.07
8분위	4	0.01	18	0.03	45	0.04
9분위	1	0	12	0.02	19	0.02
10분위	0	0	5	0.01	19	0.02
Total	48,688	100	59,440	100	113,869	100

3. 소득분위배율 분석결과

- 소득불평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분위별 평균 소득을 구하고, 그 값의 배율을 분석하였음. 통계청에서 공개하는 한국 사회 전체의 소득 1분위 10분위의 소득배율 차이는 19년도 10.8배, 20년도 10.6배, 21년도 10.7배로 3개년도 동안 10배 정도로 나타났음. 반면, 노인일자리 참여자/대기자의 경우 참여소득이 없었다면, 19년도 3.0배, 20년도 3.4배, 21년도 2.9배로 한국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비해서 매우 낮은 상황으로 나타났음.
- 노인일자리 참여소득을 합한 경상소득으로 계산한 소득 불평등도는 보다 많이 개선되었음. 19년 2.4배, 20년 2.7, 21년 2.6배인데, 이는 일자리 참여소득이 없는 경우보다 19년도 0.6배율 . 20년도 0.7배율, 21년도 0.3배율만큼 줄어든 수치임. 개선의 정도는 일자리 참여자만 포함하여 분석하였을 때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음. 다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21년도에 일자리 참여 개선을 통해 소득개선의 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임. 이후 지니계수 분해분석을 통해 확인을 통해 개선효과가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함.

〈표 5-8〉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연도별 소득배율 차이

		한국 전체	노인일자리 참여자/대기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경상소득-참여소득	경상소득	경상소득-참여소득	경상소득
2019	1분위	1,042,850	414,580	644,864	415,500	669,750
	10분위	11,313,843	1,242,726	1,566,373	1,229,984	1,568,509
	분위배율	10.8	3.0	2.4	3.0	2.3
2020	1분위	1,074,990	375,000	591,455	375,000	616,870
	10분위	11,373,773	1,262,980	1,593,550	1,239,440	1,589,266
	분위배율	10.6	3.4	2.7	3.3	2.6
2021	1분위	1,123,324	496,699	654,111	491,505	693,001
	10분위	11,972,227	1,439,091	1,677,852	1,398,596	1,667,430
	분위배율	10.7	2.9	2.6	2.8	2.4

○ 지금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지역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함. 첫째, 연령에 따른 소득분위배율은 참여 소득을 뺀 경우 6070대가 80대 이상에서보다 분위배율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일자리 참여 소득을 더한 후에도 분위배율이 80대이상에 비해 소득 불평등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6070대와 80대 이상의 경우 1분위에서의 소득증가는 차이가 미미하지만 10분위 평균 소득의 증가는 그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생각됨. 3개년도 전체 평균으로 설명하면, 6070대 10분위의 일자리참여 소득을 더했을 때 4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80대 이상의 경우 36만원이 증가하여 8만원의 차이를 보이나, 1분위에서는 6070대 5.9만원, 80대이상 7만원으로 1.1만원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차이로 인해 80대 이상에서의 분위배율상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나, 긍정적인 상황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음. 왜냐하면 이는 80대이상의 경우 6070대에 비해 낮은 소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임.

〈표 5-9〉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연도별 소득배율 : 연령

		60~70대		80대이상	
		경상소득	경상소득-참여소득	경상소득	경상소득-참여소득
2019	1분위	661,667	438,080	607,533	375,000
	10분위	1,676,137	1,323,470	1,249,166	975,748
	분위배율	2.5	3.0	2.1	2.6
2020	1분위	612,380	396,500	558,750	336,000
	10분위	1,728,820	1,372,000	1,229,574	969,370
	분위배율	2.8	3.5	2.2	2.9
2021	1분위	677,157	525,000	607,500	436,500
	10분위	1,789,029	1,528,195	1,389,752	1,183,172
	분위배율	2.6	2.9	2.3	2.7

- 둘째, 성별에 따른 소득의 분위배율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소득불평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일자리 참여소득을 뺀 경우 남성은 19년 3.4배율, 20년 3.8배율, 21년 3.3배율로 여성의 19년 2.8배율, 20년 3.2배율, 21년 2.7배율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남성은 19년도 2.7배율, 20년 3.0배율, 21년 2.8배율로 참여소득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19년 0.7배율, 20년 0.8배율, 21년 0.5배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19년 0.5배율, 20년 0.7배율, 21년 0.2배율로 일자리 참여의 소득 불평등도 개선은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0〉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연도별 소득배율 : 성별

		남성		여성	
		경상소득	경상소득 -참여소득	경상소득	경상소득 -참여소득
2019	1분위	656,773	427,500	639,808	406,500
	10분위	1,746,216	1,455,033	1,476,551	1,158,372
	분위배율	2.7	3.4	2.3	2.8
2020	1분위	621,455	411,000	583,125	359,603
	10분위	1,864,886	1,564,637	1,473,750	1,151,000
	분위배율	3.0	3.8	2.5	3.2
2021	1분위	690,180	519,979	640,249	486,000
	10분위	1,933,338	1,708,756	1,571,092	1,326,462
	분위배율	2.8	3.3	2.5	2.7

○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배율은 대학이상이 고졸이하보다 더 낮게 나타났음. 먼저, 경상소득으로 살펴보면, 고졸이하는 19년 2.9배율 20년 3.2배율, 21년 3.0배율로 대졸이상의 2.3배율, 20년 2.5배율, 21년 2.4배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참여소득으로 인한 분위배율의 개선은 20년도에는 고졸이하가 0.7배율로 대졸이상의 0.6배율에 비해 0.1배율 높으나, 19년에는 고졸이하가 0.6배율, 21년은 0.5배율로, 대졸이상의 0.6배율, 21년 0.3배율보다 0.1배율 낮게 나타났음. 이에 소득 개선의 정도는 두 집단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마지막으로 두 집단간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경상소득 기준으로 1분위에서는 대졸이상이 19년 17,289원, 20년 15,157원, 21년 40,467원이 더 높으나 10분위에서는 고졸이하가 19년 290,389원, 20년 339,573원, 21년 315,159원이 더 높게 나타났음.

〈표 5-11〉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연도별 소득배율 :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경상소득	경상소득-참여소득	경상소득	경상소득-참여소득
2019	1분위	638,029	415,000	655,318	423,840
	10분위	1,820,227	1,443,793	1,529,838	1,212,148
	분위배율	2.9	3.5	2.3	2.9
2020	1분위	590,700	381,000	605,857	390,000
	10분위	1,879,030	1,502,837	1,539,457	1,215,083
	분위배율	3.2	3.9	2.5	3.1
2021	1분위	635,700	473,593	676,167	510,000
	10분위	1,938,757	1,647,833	1,623,598	1,387,133
	분위배율	3.0	3.5	2.4	2.7

-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른 분위배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특별시·광역시의 분위배율이 도단위 지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일자리 참여 소득을 뺀 경우에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 참여 소득을 더한 경상 소득을 기준으로도 같거나 더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일자리소득을 더했을 때 분위배율의 개선은 특별시/광역시 19년 0.6배율, 20년 0.7배율, 21년 0.3배율로 도단위 지역의 19년 0.6배율, 20년 0.5배율, 21년 0.3배율에 비해 20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2〉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연도별 소득배율 : 지역

		특별시/광역시		도	
		경상소득	경상소득-참여소득	경상소득	경상소득-참여소득
2019	1분위	650,749	419,954	640,470	411,000
	10분위	1,614,020	1,281,249	1,535,148	1,218,155
	분위배율	2.5	3.1	2.4	3.0
2020	1분위	591,578	379,500	591,578	372,909
	10분위	1,654,897	1,315,490	1,654,897	1,231,342
	분위배율	2.8	3.5	2.8	3.3
2021	1분위	635,970	487,359	666,849	504,016
	10분위	1,709,610	1,469,873	1,660,930	1,421,580
	분위배율	2.7	3.0	2.5	2.8

4. 지니계수 분해분석

- 지니계수에 대한 분해분석을 통해 전체 소득에서 각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 불평등에 기여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니 계수와 지니 상관계수를 도출하였음. 그러나 본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통계청 분석 자료와 큰 차이를 보임.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의 2019년 지니계수(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는 .339인데 반해 본 표본에서의 지니계수는 .2417로 소득분배가 훨씬 평등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차이는 본 표본의 사례 중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에 속하는 경우가 약99%로 동질한 집단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지니계수 분해분석의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지니계수는 일자리 참여소득을 뺀 경우 19년도 0.2417, 20년 0.2657, 21년 0.2393으로 20년에 증가하였음. 21년에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일자리 참여소득을 더한 경상소득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는 19년 0.2003, 20년 0.2210, 21년 0.2082로 경상소득 뺀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19년 0.0414, 20년 0.0447, 21년 0.0311씩 소득불평등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무엇보다도 20년의 경우 코로나로 소득불평등 정도가 증가하였을 시기에 일자리 참여소득의 투입효과는 다른 해에 비해 더 컸음.
- 둘째, 전체 소득에서 세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S_k)을 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이 2/3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순으로 나타났음. 일자리 참여소득을 더한 경우에도 그 차이가 크지 다만, 일자리 참여소득으로 인해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7%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셋째, 해당소득의 지니계수(G_k)를 살펴보면, 일부 집단만이 사업소득과 재산 소득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니계수가 매우 높았음. 사업소득이 있는 사례는 3개년도 총 37,316사례로 이들의 평균 20만원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값은 150만원임. 다른 집단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0이기에 완전한 소득불평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0.99의 지니계수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됨. 재산소득의 경우는 3개년도 총 842,304사례로 평균 소득이 약 9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 역시 전체사례의 1/3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은 소득이 0으로 입력된 상황에서 지니계수가 0.7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다음은 근로소득으로 3개년도 총 1,627,342사례로 평균 29.4만원의 소득을 가지는 반면 표준 편차가 318,902로 집단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이들의 지니계수는 19년 0.5534, 20년 0.6323, 21년 0.5179로 20년에 가장 높았고, 19년 21년 순으로 나타났음. 마지막으로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에 비해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일자리 참여소득을 뺀 경우 19년 0.2340, 20년 0.2423, 21년 0.2342로 매년 큰 차이를 보이 않았으나, 참여소득을 더한 공적이전소득의 지니계수는 19년에 비해 20년에 0.1753에서 0.1931로 0.0178만큼 증가하였음.

- 넷째, 지니계수와 각 소득별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보여주는 상관계수 (Rk)는 공적이전소득이 0.8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0.6 정도로 비슷하였고, 재산소득이 0.4~4정도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또한 지니계수의 기여도(share) 역시 공적이전소득이 55%정도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는 근로소득 약 35%, 재산소득, 사업소득 순으로 나타났음. 소득의 구성 중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 기여도 역시 높았으며, 근로소득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지니계수에 기여도는 높은 것을 나타났음.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량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전체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모두 음(-)의 값을 지님. 이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증가를 해도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는 것을 의미함. 반면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일자리참여소득이 뺀 경우에 비해 포함한 경상소득에서 감소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일자리 사업을 통한 소득은 노인일자리 참여자.대기자의 소득불평등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5-13〉 지니계수 분해분석 결과표

2019	경상소득					경상소득-노인일자리참여소득				
	Sk	Gk	Rk	Share	% Change	Sk	Gk	Rk	Share	% Change
근로소득	0.1867	0.5534	0.6684	0.3449	0.1581	0.2475	0.5534	0.6244	0.3539	0.1064
사업소득	0.0029	0.9933	0.631	0.0092	0.0062	0.0039	0.9933	0.6791	0.0109	0.007
재산소득	0.0358	0.7578	0.4443	0.0602	0.0244	0.0474	0.7578	0.4979	0.0741	0.0266
공적 이전소득	0.7745	0.1753	0.8642	0.5857	-0.1888	0.7012	0.234	0.8268	0.5612	-0.14
총 소득		0.2003					0.2417			
2020	Sk	Gk	Rk	Share	% Change	Sk	Gk	Rk	Share	% Change
근로소득	0.1907	0.6323	0.6833	0.3728	0.1821	0.2523	0.6323	0.6896	0.414	0.1617
사업소득	0.0033	0.9926	0.6195	0.0092	0.0059	0.0044	0.9926	0.6512	0.0106	0.0062
재산소득	0.0142	0.9485	0.5592	0.0341	0.0199	0.0188	0.9485	0.6034	0.0405	0.0217
공적 이전소득	0.7918	0.1931	0.8443	0.584	-0.2078	0.7245	0.2423	0.8098	0.5349	-0.1896
총 소득		0.221					0.2657			
2021	Sk	Gk	Rk	Share	% Change	Sk	Gk	Rk	Share	% Change
근로소득	0.2186	0.5179	0.6644	0.3613	0.1427	0.2644	0.5179	0.6343	0.363	0.0986
사업소득	0.0031	0.9932	0.6099	0.0091	0.006	0.0038	0.9932	0.645	0.0101	0.0063
재산소득	0.0441	0.7478	0.4615	0.0731	0.029	0.0533	0.7478	0.5081	0.0846	0.0313
공적 이전소득	0.7342	0.1894	0.8333	0.5566	-0.1776	0.6785	0.2342	0.8165	0.5422	-0.1362
총 소득		0.2082					0.2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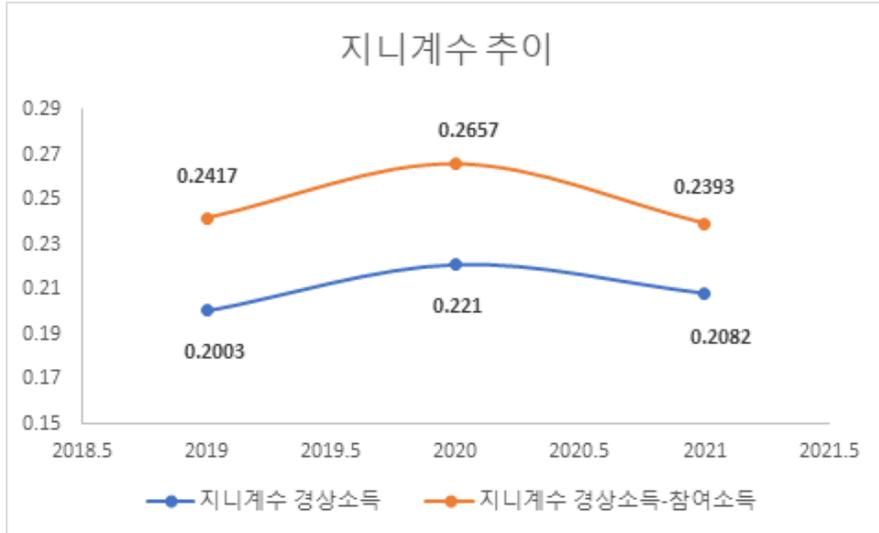
*Sk: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Gk: 해당 소득 지니

***Rk: 지니 상관계수

***Share: 불평등 기여도

[그림 5-1] 지니계수 추이



제3절 소결

- 노인일자리 참여자/대기자의 경우 한국 전체 소득 기준으로 대입하여 보았을 때 대부분 빈곤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생각됨.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를 통해서 매월 평균 26만원 정도를 받으며, 한국전체 분위별 기준으로 1분위에서 2분위로의 이동으로까지 이어졌음. 또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대기자에 비해 소득수준이 매우 낮는데, 일자리 참여로 인해 소득 수준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었음. 마지막으로 참여자/대기자의 경상소득과 일자리 참여소득을 뺀 경상소득으로 10분위를 구분한 결과 일자리 참여 소득 이전에는 1분위의 기준이 1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일자리 참여 후 1분위의 기준이 월 소득 30만원 정도로 증가하였음.
- 분위배율에 따른 소득불평등 정도는 80대, 여성, 대졸이상, 도 단위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실질 일자리 참여로 인한 소득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는 연령(80대이상), 성별(남성)에서만 차이가 나타났음.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질 소득의 증가에서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에 소득불평등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빈곤에 대한 개선, 실질 임금개선 정도 개선 효과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음.
- 그리고 지니계수 분해분석 결과 노인의 소득에 2/3정도가 공적소득이전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공적이전소득은 다른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과는 달리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을 뺀 소득과 포함한 경상소득을 비교하였을 때 포함한 경우에 소득불평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최승은(2020)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가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동일한 것임.

- 그러나 전체 집단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과는 달리 대기자와 참여자의 소득을 비교하였을 때 참가 유무로 인해 하위소득 10%에서 벗어나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특히 빈곤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살의 문제가 심각한 한국의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적부조/데모그란트 형태의 기초연금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였을 때 하위 70%를 위한 현금 급여형태 보다는 노동 가능한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통해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하위 1,2분위의 노인을 중심으로 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주요결과

제2절 정책제언

6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주요결과

- 이 연구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의 소득 특성을 파악하고, 노인일자리 급여가 노인가구의 빈곤 완화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9년, 2020년, 2021년(6개월) 3개년도를 기준으로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자료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자료를 결합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기자 집단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노인일자리 급여가 가구의 빈곤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정하기 위해 확인된 소득인정액과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음.
- 참여자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은 2019년 93.2%, 2020년 93.5%, 2021년 90.8%로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음.
- 2019년도와 2020년도 각 시점에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노인일자리 급여가 가구의 빈곤 감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각각 10.0%p, 11.1%p로 나타났고, 동일한 시점에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빈곤 감소 효과는 각각 18.5%p, 10.2%p로 확인되었음.
- 또한 2019년도에 대기자 상태로 있다가 2020년도에 참여자가 된 경우 빈곤율은 2.9%p 감소하였고, 빈곤갭 비율은 8.9%p 줄어들었음.
 - 두 시점 간에 대기자에서 참여자로 전환된 경우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빈곤율은 2.1%p, 빈곤갭 비율은 8.9%p 감소하고, 시장형 참여자의 빈곤율은 4.0%p, 빈곤갭 비율은 8.2%p 감소 효과를 보였음.

130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노인일자리 급여(월 기준)의 빈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일자리 급여는 빈곤에 빠질 위험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음.
- 소득원천별 FGT 지수를 분석한 결과, 노인일자리 급여는 경상소득에서 2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 약 32.9%, 기초연금 24.9% 다음으로 비중이 높음.
- 노인일자리 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에 이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소득 분위별 변화와 분위배율 개선, 지니계수 분해 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음.
 - 일자리 급여의 소득불평등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청에서 제시한 한국 전체의 소득분위 기준에서 참여자는 1분위에서 2분위로 이동하는 결과를 보였고, 참여자 및 대기자의 경상소득으로 10분위 소득을 구분한 소득분위 기준에서 1분위의 월 소득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소득 분위배율에 따른 소득불평등은 80대 이상 연령층과 남성에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음.
 - 끝으로 경상소득에서 노인일자리 급여를 뺀 가구소득과 포함시킨 가구소득(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2019년 0.2417, 2020년 0.2657, 2020년 0.2393에서 2019년 0.2003, 2020년 0.221, 2021년 0.2082로 수치가 감소해 노인일자리 급여를 통한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었음.

제 2절 정책제언

-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가구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저소득층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참여자의 97%는 가구소득이 1-2분위에 쏠려있음. 이러한 최하위 소득에 집중된 소득 지위 구조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어렵게 함. 무엇보다도 정책목표를 노인빈곤율 개선으로 설정할 경우 가시적 성과를 낳기가 쉽지 않음.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정책대상이 빈곤의 심도가 깊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급여의 소득개선 효과가 전체 노인빈곤율 완화 목표와 연계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에 서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노인일자리 급여인상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제도로서 미흡한 육구층 족에 대해 부가소득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2020년도에 노인일자리 급여를 제외한 경상소득과 기초연금액을 포함할 경우 참여자의 빈곤율은 무려 93.2%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가계소득 구조에서 노인일자리 급여는 참여자의 빈곤완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인일자리 급여를 인상할 경우 참여자의 빈곤율은 10.2%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리고 급여를 인상한다면 빈곤완화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에서 예측해 보았을 때, 노인일자리 급여를 월 5만원 인상시 빈곤율은 총 7.2% 포인트, 월 10만원 인상시 빈곤율은 총 14.5% 포인트 까지 빈곤감소 효과가 나타났음. 손병돈 외(2019)의 연구에서도, 중기 재정계획 목표로 설정된 100만 명에게 월 40만원의 활동비를 11개월 동안 지원하였을 경우 노인빈곤율을 3.0% 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음.

- 사업규모가 큰 공익활동 사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면 빈곤 감소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현재 사회활동과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규모로 보면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형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노인일자리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사업규모가 가장 크고 정부가 직접 조건을 강화할 수 있는 공익활동형의 급여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현안이 될 것임. 현재 월 27만원 고정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공익활동 참여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급여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급여산정 모델과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정책으로 노인빈곤을 개선의 직접적 정책목표와 연결된 국민연금제도나 기초연금제도와 달리 노인일자리사업은 간접적으로 그러한 정책적 성과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 손병돈 외(2019)와 김기태 외(2020) 연구에서 노인일자리 급여의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각각 0.9%, 1% 수준으로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이는 하위 소득분위에 참여자들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 이해됨. 결국 노인일자리 정책목표를 상위 차원의 목표인 노인빈곤율 개선보다 참여노인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라는 하위 차원의 정책목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 정책목표를 굳이 노인빈곤율의 직접적 해결에 두지 않더라도 저소득 노인의 빈곤을 해결하는 역할 측면에서 노인일자리 급여의 사회적 가치는 큼.
 - 본 연구에서는 급여의 노인빈곤율 완화효과를 추정하지 않았지만,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노인일자리 급여와 기초연금제도 각각이 미치는 빈곤완화 효과는 유사하였음.
 - 2020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의 빈곤율은 93.5%인데, 기초연금을 추가하였을 때 빈곤율이 87.9%이며, 노인일자리 급여를 추가하였을 때

빈곤율이 87.8%로 빈곤율이 완화되는 정도가 거의 같음. 그리고 같은 해 경상소득 기준으로도 기초연금을 추가하였을 때와 노인일자리 급여를 추가하였을 때 빈곤율이 변화된 수준은 유사하게 나타났음.

- 둘째, 소득위주의 선발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유형의 비중은 점차 축소하는 대신 높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 노인들 위주로 정책대상을 타겟팅 하는 현재와 같은 선발기준은 다양한 정책대상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함. 참여자 선발기준은 소득인정액의 가산점이 최대 60점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참여자를 결정하는 데 소득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 이대로 노인빈곤율 완화에 정책목표를 둔다면 상대적으로 빈곤탈출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은 선발기준에 의해 탈락될 가능성이 높은 대신 빈곤 정도가 심한 노인들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양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 노인일자리 정책대상의 사회적 형평을 기하면서 소득기준 외에도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선발조건을 갖춘 일자리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공익활동 유형만으로 사회적 형평을 고려한 정책을 강화하면 자칫 노인일자리 다양성과 질적 개선을 저해할 수 있음. 일부 유형의 급여인상이나 대상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에 치중될 경우 시장형 사업이나 고령친화형기업과 같은 창업형 일자리나 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과 같은 취업형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지금보다 개선되지 못하고 위축될 수 있음.
 - 그나마 공익활동을 제외하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급여 수준을 상향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인 사회서비스형은 소득기준보다 노인의 직업적 경험이나 지식, 활동역량을 기초로 한 선발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하위 소득계층에 쏠린 공익활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지금은 이 사업의 참여인원이 연 4만 5천 명 정도의 소수인원에 지나지 않아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음.

○ 셋째, 공익활동은 노인빈곤을 해결 정도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공익활동형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의 특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격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참여가 가능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일자리 급여를 수급자격을 판정하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노인일자리 급여는 부가적 급여로서 기능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2019년 대기자 상태에서 2020년도에 공익활동에 참여한 노인의 빈곤율은 8.9% 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맞춤형 급여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 즉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낮음. 본 연구에서 확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은 전체 참여자의 1.5%에 불과함.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자격요건에서 배제되고 있고, 생계급여 수급자 판정 시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족한 급여를 보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음.

-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생계를 목적으로 사업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던 노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보호가 가능해졌음. 그러나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과 근로욕구가 높은 노인이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닫혀 있음.

-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노인일자리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노인일자리 자격기준을 변경하는 문제로 단순화시키기 어려움. 만약에 노인일자리 급여로 늘어난 가구소득이 생계급여 자격의 소득수준을 넘길 경우 생계급여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의 참여

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노인일자리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간에 소득역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넷째, 소득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를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함.

- 한국은 노인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매우 높은 국가. OECD 국가의 노인 평균 지니계수는 2019년도 기준으로 0.302인데 비해 한국은 0.419로 큰 차이를 보임(OECD, 2019).
- 본 연구에서 노인일자리 신청자(참여자, 대기자) 집단의 지니계수는 0.2417이며, 노인일자리 급여를 더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0.047 정도의 지니계수 값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월 27만원의 공익활동은 노인의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서 보충적인 소득 확보 차원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활성화하여야 함.
- 노인일자리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적절한(decent) 근로조건을 전제하는 일자리보장제(Job Guarantee)의 운영 원칙에 따라 노인일자리 정책의 방향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일자리보장제의 도입은 한시적으로 일자리나 일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만 그치지 않고 근로의 지속성을 유지하되, 자발적으로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지원에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전제가 되어야 함. 노인일자리 유급노동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복지적 조건을 강화한다면 소득불평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음.

참고문헌 <<

- 강욱모. (2018).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현상과인식, 42(3), 41-72.
- 강은나, 백혜연, 김영선, 오인근, 배혜원. (2017).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구인회·손병돈·안상훈. 2010.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 국회예산정책처. 2020 경제·재정수첩.
- 김기태, 정은희, 류진아, 이소정, 박경하, 염태산, 김보미. (2020).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민길, 김민호, 조민효. (2018).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질적 정책평가: 논리모형 도출 및 정책 대상자 중심 효과 분석.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57-390.
- 김우주.(2016).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김진욱. (2004).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 171-195.
- 노대명, 김현경, 정해식, 이원진, 길현중, 오상봉, ... 권혁진. (2020).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연구: 제도간 연계·조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손병돈, 이원진, 한경훈. (2019). 노인일자리가 노인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 오승환. 2007. 노인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중소도시, 농촌, 어촌 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 23.
- 유혜림, 민인식(2019). 최상위 소득 대체를 활용한 근로소득 불평등 측정. 노동정책연구, 19(1),157-179
- 이성은. 2013.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24(3).

138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이지혜, 황남희. (2019).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가구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득과 소비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1), 11-38.

정병은·이기홍, 2009.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권 3호.

전용호, 이금룡. (2013). 노인 자원봉사의 인정과 보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2, 173-201.

통계청. 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최승은(2020). 노인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분석: 소득과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홍경준. (2011). 공적 소득이전의 분배효과분석: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2), 65-88.

황선재, 김정석(2013). 노년기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한국사회학, 47(4), 201-226

Hicks, A., & Swank, D. (1984). On the political economy of welfare expans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18 advanced capitalist democracies, 1960-1971.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7(1), 81-119.

Korpi, W., &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1-687.

OECD(2019). Pension at a Glance 2019.

Ringen and Uusitalo. (1991). "Income Distribution in the Nordic Welfare States." In Comparing Welfare States and Labour Markets, edited by Jon Eivind Kolberg. Armonk NY: M.E. Sharpe.

부록 << (설문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 \textcircled{1}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textcircled{2}$$

① 소득평가액

$$\text{소득평가액} = \underbrace{\{0.7 \times (\text{근로소득} - 98\text{만원})\}}_{\textcircled{a}} + \underbrace{\text{기타소득}}_{\textcircled{b}}$$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적용 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2021년 노인 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특성 분석

발행일	2022년 2월 인쇄 2022년 2월 발행
발행인	김미곤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연구조사센터 대표전화 1566 - 0151
인쇄처	(주)이문기업 대표전화 02 - 504 - 1600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모든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